



제 609호 2024. 5. 16 (목)

**규 칙**

제779호	김해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	38430
제780호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	38431

**고 시**

제2024-177호	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변경·폐지)에 관한 고시 .....	38441
제2024-179호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1-8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	38455
제2024-180호	김해 내덕지구 도시개발사업 .....	38459
	개발계획(20차 변경) 수립, 실시계획(16차 변경) 인가 고시	

**공 고**

제2024-2339호	김해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임호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	38506
-------------	-------------------------------------	-------

제621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김해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 김해시장 홍태용

2024년 5월 16일

김해시 규칙 제779호

### 김해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김해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1호서식]

### 임의변제 청구서

청 구 인 (원고)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 소					
	연락처		성별			
청 구 인 (원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성별			
위 청 구 인 의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성별			
원고 , 피고 김해시(장) 간의 법원 사건은 원고등의 승소판결이 확정(가집행선고)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명	지방법원 인용액	고등법원 인용액	지방법원 인용액	청구금액 원금	이자	합계
첨부 : 1.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원 원본) 1부 2. 신분증(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고와 대리인 각각의 신분증) 사본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위임장 1부(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						
20 . . . . .						
김해시장 귀하						청구인(대리인) <span style="float: right;">인</span>

#### ◇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정비 계획에 따라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피소사건 패소 시 임의변제 청구를 위한 서류를 간소화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정비하고, 임의변제 청구 서식 개정을 통한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절한 관리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 주요내용

임의변제 청구 관련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11호서식)

- 첨부서류 중 '2. 인감증명서' 제출 사항 삭제
- 청구인(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

제621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 김해시장홍태웅

2024년 5월 16일

김해시 규칙 제780호

###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해통합도서관”이란 김해시에 있는 시립도서관, 공립 작은도서관, 김해시와 협약한 사립 작은도서관, 김해시청소년센터 및 김해시행정자료실을 말한다.
2. “가족ID”란 김해통합도서관 회원인 가족 구성원이 공유하는 도서관 이용자 식별번호를 말한다.
3. “책이음서비스”란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책이음 참여도서관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4. “특별대출서비스”란 장애인, 다자녀 가정 등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한 대출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회원의 종류)** 김해통합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회원  
가. 일반  
나. 청소년  
다. 어린이
2. 단체회원(경상남도 소재 기관 또는 단체)
3. 특별회원(특별대출서비스 이용자)

**제4조(회원가입 절차 등)** ① 회원가입은 도서관에 설치된 회원가입 시스템을 통해 가입을 신청하고, 회원증을 발급받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서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회원가입 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김해통합도서관 회원가입 신청서를 도서관에 제출하여 회원가입 시스템을 통한 가입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1. 경상남도에 주소와 두고 있는 사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얼굴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
2. 경상남도에 소재한 직장이나 학교에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사람: 신분증 및 재직(재학)증명서
3.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국내거소신고자 및 외국인등록자: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4. 경상남도에 소재한 기관 또는 단체: 기관이나 단체의 증명서류 또는 협약서

② 14세 미만인 사람이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회원 가족 구성원끼리는 가족ID를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을 위해서는 신청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 대리인이 회원가입을 신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김해통합도서관 회원가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
3.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⑤ 다른 지역 책이음서비스 회원은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회원정보 반입을 통해 회원자격을 가진다.

**제5조(회원탈퇴)** ① 회원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대출한 자료를 모두 도서관에 반납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회원탈퇴 신청서를 지정된 도서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회원탈퇴 후 도서관은 해당 회원의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한다.

④ 대리인이 회원탈퇴를 신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회원탈퇴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

3.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제6조(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이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 각 호의 회원가입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제7조(자료실 이용)** ① 자료실 컴퓨터 이용시간은 하루 최대 2시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추가 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게임, 도박, 해킹, 음란 사이트 접속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의 질서유지와 다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자료대출 및 반납)** ① 도서관 자료를 대출할 때는 본인의 회원증(모바일 회원증을 포함한다) 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② 가족ID가 등록된 회원은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한 후에 등록된 가족 구성원을 대신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③ 개인회원의 대출 권수는 최대 10권이다. 다만, 책이음서비스 회원은 각 도서관에서 10권씩 총 30권까지 대출할 수 있다.

④ 개인회원의 대출 기간은 대출일부터 14일 이내로 하되, 예약자가 없는 자료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반납일로 한다.

⑤ 단체회원의 대출 권수 및 대출 기간은 협약으로 정한다.

⑥ 특별회원의 대출 권수 및 대출 기간은 특별대출서비스 운영계획에 따른다.

⑦ 대출자료를 대출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았을 경우, 연체 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⑧ 제3항·제4항·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 권수와 대출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타관대출 및 반납)** ① 회원은 김해통합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비도서 자료는 제외한다)를 원하는 도서관에서 대출 및 반납할 수 있다.

② 타관대출 권수는 전체 대출 가능한 권수에 포함된다.

③ 자료를 제공하는 도서관은 사정에 따라 타관대출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④ 기한 내 대출하지 않은 타관대출 신청자료가 3권을 초과하였을 때는 30일간 타관대출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0조(대출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고서 및 그 밖에 귀중한 자료

2. 한정판으로 신규 구입이 어려운 자료

3. 신문 및 당월호 잡지

4. 그 밖에 도서관장이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1조(희망자료 신청)** ① 회원은 각 도서관별로 매월 최대 3권까지 비치 희망자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희망자료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제외할 수 있다.

1. 소장·구입·정리 중이거나 품질·절판된 자료

2. 출판된 지 3년이 지난 자료(컴퓨터, 과학, 제테크, 신학문 분야는 2년)

3. 5만원 이상의 고가 자료나 전집

4. 비도서 자료, 연속간행물, POD(주문형 출판) 도서

5. 수험서, 문제집, 참고서, 대학교재, 특정 분야 전문서적 등

6. 판타지소설, 무협소설, 로맨스소설, 인터넷소설, 만화 등(문학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예외)
7. 스프링 제본, 규격 외 판형, 팝업북, 컬러링북, 낱장자료 등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은 형태의 자료
8. 영리 목적, 정치적, 종교적 편향성을 띤 자료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유해자료
9. 유사자료가 이미 많이 소장되어 있는 경우
10. 그 밖에 공공도서관 자료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료

**제12조(기증자료 관리)** ① 도서관장은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받아 도서관자료로 등록하고, 이를 이용자가 열람하거나 대출하게 할 수 있다.

- ② 기증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도서관장이 기증자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자료기증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
- ③ 기증자료는 출판된 지 최근 3년 이내의 자료로 제한한다. 다만, 한정판, 절판 또는 희귀자료 등은 제한하지 않는다.
- ④ 기증자료가 도서관자료로 적합하지 않거나 기존 소장자료와 중복될 경우에는 이를 행사에 활용하거나 관련 기관·단체에 재기증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 ⑤ 기증자는 일단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면, 그 자료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부대시설 이용)**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부대시설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 ② 도서관 부대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도서관 부대시설 이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③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할 때는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도서관 부대시설 이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이용료 감면)**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부대시설 이용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서관 부대시설 이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②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평생학습강좌 수강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평생학습강좌 수강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이용료 반환)** 조례 제16조에 따라 부대시설 이용료나 평생학습강좌 수강료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도서관 부대시설 이용 취소신청서나 별지 제9호서식의 평생학습강좌 수강 취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립도서관 부대시설 이용범위(제13조 관련)**

도서관명	이용 가능 시설
장유도서관	공연장
김해율하도서관	-
김해기적의도서관	다목적강당
칠암도서관	공연장, 시청각실
화정글샘도서관	-
진영한빛도서관	공연장, 다목적홀, 시청각실





[별지 제2호서식]

### 위 임 장

① 위임한 사람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② 위임받은 사람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제5조제4항에 따라 김해통합도서관 회원(가입 탈퇴)에 관한 사항을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김해시 ○○도서관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 회원탈퇴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남·여)	회원번호	
	전화번호			
	주 소			
탈퇴사유				

본인은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의 사유로 김해통합도서관 회원탈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해시 ○○도서관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b>자료기증 동의서</b>		
<b>기 증 자</b>	성 명 (단체명)	
	연락처	
<b>기증자료</b>	자료명	
	수 량	
<b>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b>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성명, 연락처	기증자료 관리
	보유기간	
		<b>3년</b>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자료기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위 자료를 무상으로 기증하며,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기증자료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성 명: 김해시 ○○도서관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앞면)

<b>도서관 부대시설 이용(변경) 신청서</b>				
<b>신 청 자</b>	성 명 (단체명)	(남·여)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이 메 일	전자세금계산서 수신 이메일
	주 소	<i>고지서 수령 주소</i>		
<b>행 사 명</b>				
<b>행사내용</b>				
<b>참석대상 (인원)</b>				
<b>이용기간</b>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일    시간    회)			
<b>이용시설</b>	기본시설			
	부속시설			
<b>변경내용</b> ※변경 시 작성	변경사항			
	변경사유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서관 부대시설 이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김해시 ○○도서관장 귀하				
<b>첨부서류</b>	행사계획서			

### 김해시 시립도서관 부대시설 이용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김해시 시립도서관 부대시설 이용 신청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해시 시립도서관 부대시설 이용을 위한 고지사항 전달	<b>3년</b>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립도서관 부대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	----------------------------------

<그 밖의 고지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수집근거
<b>주민등록번호</b>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 <b>제32조</b>

신청인: \_\_\_\_\_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김해시 ○○도서관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 도서관 부대시설 이용료 감면신청서

신청자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남·여)
	전화번호			
	주소			
행사명				
이용기간	_____년 _____월 _____일 시 ~ _____년 _____월 _____일 시 ( _____일 시간 회)			
감면사유				
감면금액	_____원 (이용료 _____원의 _____%)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서관 부대시설 이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_____년 _____월 _____일 (서명 또는 날인)
김해시 ○○도서관장 귀하				
첨부서류	감면 증명서류			





## 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변경·폐지)에 관한 고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변경·폐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14일

김 해 시 장

노선명	노선번호	자전거도로의 종류	도로관리청	도로구간		총길이 (km)	자전거도로 너비(m)	주요 경유지	지정 (변경·폐지) 사유
				기점	종점				
김해대로2L	대로 1-1-1	전용도로	김해시	동신아파트 앞	연기2교사거리	1.72	1.80	삼계구안아이파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일괄 고시
김해대로2R	대로 1-1-1	전용도로	김해시	연기2교사거리	월드가구백화점	2.45	1.80	동지공원	“
김해대로3L	대로 1-1-1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분리)	김해시	연기2교사거리	진하교	2.26	2.00	연지공원	“
김해대로4L	광로 2-1-3	전용도로	김해시	진하교	신어교	1.95	2.00	아이스퀘어몰	“
김해대로4R	광로 2-1-3	전용도로	김해시	동김해IC사거리	진하교	2.62	2.00	김해시청	“
김해대로5L	대로 1-1-9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분리)	김해시	신어교	양장물삼거리	1.55	1.50	김해대학역	“
김해대로5R	대로 1-1-9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분리)	김해시	지내역	김해대학역	0.66	1.50	교원 김해장래식장	“
김해대로1902번길1L	중로 2-63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분리)	김해시	노인복지회관 앞	이진캐스빌	0.78	1.50	이진캐스빌	“
김해대로1902번길1R	중로 2-63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분리)	김해시	이진캐스빌	노인복지회관 앞	0.77	2.00	브래그블링센터	“
김해대로1902번길2L	중로 2-53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분리)	김해시	일동미타주아파트	노인복지관사거리	0.20	2.00	출속자연유치원	“
김해대로1902번길2R	중로 2-53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분리)	김해시	노인복지관사거리	일동미타주아파트	0.20	2.00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	“
김해대로2272번안길R	중로 1-37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분리)	김해시	구산천2교	전기차충전소	0.37	2.00	김해부원역푸르지오아파트	“
김해대로2492번길R	중로 3-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분리)	김해시	메가마트 남쪽	메가마트 북동쪽	0.12	1.50	메가마트 김해점	“
김해대로2579번길R	중로 2-5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분리)	김해시	신어교	환진교	0.57	2.00	넥센	“
생림대로R	대로 3-1-2	전용도로	김해시	삼계사거리	푸르지오차삼거리(생림)	0.92	1.50	푸르지오5단지	“

노선명	노선번호	차전거도로의 종류	도로관리청	도로구간		총길이 (km)	자전거도로 너비(m)	주요 경유지	지정 (법령·폐지) 사유
				기점	종점				
가락로L	중로 1-2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비분리)	김해시	푸르지오2차	주공4단지 끝	0.49	2.00	동산교회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일괄 고시
가락로R	중로 1-2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비분리)	김해시	구산옥거리	푸르지오2차	0.79	2.00	구산주공4단지	“
가락로294번길R	중로 2-45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비분리)	김해시	보로스빌딩	구산고등학교	0.14	2.50	구산주공5단지	“
가야로L	대로 3-1-6	진용도로	김해시	삼계사거리	이구삼거리	2.98	1.80	한라비발디아파트	“
가야로R	대로 3-1-6	진용도로	김해시	이구삼거리	삼계사거리	2.75	1.80	김해운동장	“
구산로10번길L	중로 3-13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비분리)	김해시	연지제1교	연지교	0.53	2.50	해반친변	“
구산로10번길R	중로 3-13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비분리)	김해시	연지교	연지제1교	0.30	2.50	구지공원	“
삼계로	중로 1-2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분리)	김해시	노인복지관사거리	가야대역삼거리	2.45	1.10	김해시민체육공원	“
해반친로1L	중로 1-19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분리)	김해시	생림대로 합류점	관찰교	1.60	1.20	가야대역	“
해반친로2L	소로 1-186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비분리)	김해시	관찰교	구산교	0.67	2.00	해반친변	“
삼계중앙로L	대로 2-1-5	진용도로	김해시	김해신도시삼거리	삼계체육공원	0.97	1.50	삼성아동병원	“
삼계중앙로R	대로 2-1-5	진용도로	김해시	삼계체육공원	김해신도시삼거리	0.97	1.50	부산은행	“
해반친1L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분리)	김해시	삼계동 푸르지오1차	연지1교	2.86	1.70	해반친변	“
해반친1R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분리)	김해시	강동1동 버스정류장	신명초 뒤	6.76	2.00	해반친변	“
해반친2L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분리)	김해시	연지1교	화목교	5.79	2.00	해반친변	“
경원로L	중로 1-32	진용차로	김해시	가야중학교	현대3차사거리	0.85	2.00	거북공원	“
경원로R	중로 1-32	진용차로	김해시	현대3차사거리	가야중학교	0.85	2.00	삼성아파트	“
경원로55번길L	중로 2-50	진용차로	김해시	거북공원사거리	가야해당홀	0.39	2.00	동아2차아파트	“
경원로73번길R	중로 2-33	진용차로	김해시	삼성아파트201동삼거리	삼성아파트204동삼거리	0.20	2.00	디프라이병원	“
구지로L	대로 2-1-3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분리)	김해시	연지사거리	경원교사거리	0.31	1.60	김해여자중학교	“

노선명	노선번호	자전거도로의 종류	도로관리청	도로구간		총길이 (km)	자전거도로 너비(m)	주요 경유지	지정 (번경·폐지) 사유
				기점	종점				
구지로R	대로 2-1-3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분리)	김해시	경원교사거리	대우아파트사거리	0.36	2.00	대성동고분박물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일괄 고시
금관대로IL	대로 3-1-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비분리)	김해시	내동사거리	외동사거리	1.17	1.80	김해생명과학고	“
금관대로IR	대로 3-1-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비분리)	김해시	외동사거리	연지2교사거리	1.68	2.00	경운초등학교	“
금관대로2L	대로 1-1-3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분리)	김해시	외동사거리	서김해IC막스 밀	1.31	2.00	선천지구	“
금관대로2R	대로 1-1-3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분리)	김해시	서김해IC막스 밀	외동사거리	1.14	2.00	임호체육공원	“
금관대로3L	대로 1-1-3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분리)	김해시	내덕로 합류점	버거깅	1.96	1.50	버거깅	“
금관대로3R	대로 1-1-3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분리)	김해시	김해시민장례식장	내덕로 합류점	1.87	1.50	김해시민장례식장	“
금관대로1368번길L	중로 1-6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비분리)	김해시	우암삼거리	연지1교사거리	0.32	1.80	문화의전당	“
금관대로1368번길R	중로 1-6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비분리)	김해시	연지1교사거리	우암삼거리	0.32	1.80	김해학생체육관	“
내외로L	중로 1-35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비분리)	김해시	생명과학고사거리	임호중학교 앞	1.18	1.70	임호초등학교	“
내외로R	중로 1-35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비분리)	김해시	임호중학교 앞	생명과학고사거리	1.18	1.80	경운중학교	“
내외중앙로L	대로 2-1-1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분리)	김해시	문화의전당삼거리	임호사거리	1.23	1.80	하나은행	“
내외중앙로R	대로 2-1-1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분리)	김해시	임호사거리	문화의전당삼거리	1.28	1.80	우리는행	“
내외중앙로102번길R	중로 2-30	전용차로	김해시	삼성아파트204동삼거리	해반공원	0.20	2.00	해반공원	“
동아1차아파트앞길R	중로 2-31	전용차로	김해시	동아1차303동 앞	동아1차309동 앞	0.23	2.00	거북공원	“
우암로R	중로 1-31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비분리)	김해시	성원아파트삼거리	우암초등학교사거리	1.54	1.80	경원고등학교	“
분성로IL	대로 1-1-6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분리)	김해시	엘리시안아파트입구	외동사거리	0.30	2.00	외동엘리시안아파트	“
분성로IR	대로 1-1-6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비분리)	김해시	외동사거리	엘리시안아파트 입구	0.34	2.00	외동주공아파트	“
분성로2R	대로 3-1-1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비분리)	김해시	성원아파트삼거리	외동사거리	0.71	3.10	외동초등학교	“
분성로3R	대로 3-1-1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분리)	김해시	임호사거리	성원아파트삼거리	0.50	2.00	한국2차아파트	“

노선명	노선번호	자전거도로의 종류	도로관리청	도로구간		총길이 (km)	자전거도로 너비(m)	주요 경유지	지정 (변경·폐지) 사유
				기점	종점				
분성로4R	대로 3-1-1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분리)	김해시	봉황교사거리	임호사거리	0.62	2.50	김해보건소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일괄 고시
분성로5L	대로 3-1-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비분리)	김해시	활천교개사거리	활천교사거리	0.56	2.00	굿모닝병원	“
분성로5R	대로 3-1-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비분리)	김해시	활천교사거리	동서사거리	0.36	3.30	신성미소지움아파트	“
분성로6R	대로 3-1-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분리)	김해시	안동사거리	활천교사거리	0.33	1.50	푸르지오1단지아파트	“
분성로727번길L	중로 1-26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분리)	김해시	동원아파트사거리	지내4차동원아파트	0.22	1.50	동원아파트	“
분성로727번길R	중로 1-26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분리)	김해시	지내4차동원아파트	동원아파트사거리	0.19	1.50	지내4차동원아파트	“
분성로583번길R	중로 1-9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분리)	김해시	활천교	어방3교	0.68	2.00	푸르지오2단지	“
인제로L	대로 3-1-3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비분리)	김해시	중앙자모사부인교 사거리	동김해IC사거리	1.24	3.10	고려병원장례식장	“
인제로R	대로 3-1-3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비분리)	김해시	동김해IC사거리	중앙자모사부인교 사거리	1.44	3.00	활천꽃무릇숲길	“
신어천L	중로 3-71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비분리)	김해시	삼방초등학교	활천교	1.53	2.00	신어천변	“
신어천R	중로 2-5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비분리)	김해시	활천교	조방교	1.08	3.00	신어천변	“
삼안로1L	중로 1-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비분리)	김해시	동원아파트사거리	신어초등사거리	0.43	3.00	신어중학교	“
삼안로1R	중로 1-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비분리)	김해시	신어초등사거리	화인아파트	0.63	3.00	동원아파트	“
삼안로2L	중로 1-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분리)	김해시	신어초등사거리	현일아파트사거리	0.34	1.50	현대자동차서비스	“
삼안로2R	중로 1-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비분리)	김해시	현일아파트사거리	신어초등사거리	0.37	3.00	산성교회	“
삼안로3L	중로 1-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분리)	김해시	안동유거리	활천교사거리	0.66	1.10	한성기업	“
삼안로3R	중로 1-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비분리)	김해시	활천교사거리	안동유거리	0.36	2.50	활천초등학교	“
삼안로195번길L	중로 3-6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비분리)	김해시	신어중	신어중사거리	0.12	2.50	신어중학교	“
삼안로195번길R	중로 3-6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비분리)	김해시	신어중사거리	신어중	0.15	2.70	동성아파트	“
삼안로291번길L	소로 3-99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비분리)	김해시	삼방교회 교차로	삼방공원	0.17	2.80	활천성당	“



노선명	노선번호	자전거도로의 종류	도로관리청	도로구간		총길이 (km)	자전거도로 너비(m)	주요 경유지	지정 (변경·폐지) 사유
				기점	종점				
봉화로		전용도로	김해시	약수삼거리	본산배수장	0.77	2.00	용정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일괄 고시
낙동강자전거길1		전용도로	김해시	대저수문	매리취수장	12.61	3.00	대동생태체육공원	“
낙동강자전거길2L		우선도로	김해시	매리취수장	화현마을	1.61	-	매리취수장	“
낙동강자전거길2R		우선도로	김해시	화현마을	매리취수장	1.61	-	낙동강변	“
낙동강자전거길3		전용도로	김해시	화현마을	용산마을	4.98	3.00	달무리수변공원	“
낙동강자전거길4		전용도로	김해시	비암봉임도 종점부	도마마을 입구	2.25	3.00	낙동강변	“
낙동강자전거길5		전용도로	김해시	한림배수장	시산마을 동편	2.07	3.00	한림솔피생태공원	“
낙동강자전거길6		우선도로	김해시	시산마을 동편	시산마을 서편	0.61	-	시산마을	“
낙동강자전거길7		전용도로	김해시	시산마을 서편	가동마을 진입로	1.50	3.00	솔피파크골프장	“
낙동강자전거길8		우선도로	김해시	가동마을 진입로	한림로 합류점	0.19	-	가동마을	“
낙동강자전거길9		전용도로	김해시	한림로 합류점	김해시 경계	0.42	3.00	솔피생태공원	“
낙동강자전거우회길1L		우선도로	김해시	상동 용산마을	여차고개삼거리	7.08	-	여차마을회관	“
낙동강자전거우회길1R		우선도로	김해시	여차고개삼거리	상동 용산마을	7.08	-	용산초등학교	“
낙동강자전거우회길2L		우선도로	김해시	사촌삼거리	여차고개삼거리	1.62	-	생림큰마트	“
낙동강자전거우회길2R		자전거비행자겸용도로(비분리)	김해시	여차고개삼거리	사촌삼거리	1.53	1.20	김해방주교회	“
낙동강자전거우회길3L		우선도로	김해시	봉림교차로	사촌삼거리	1.47	-	동남주유소	“
낙동강자전거우회길3R		우선도로	김해시	사촌삼거리	봉림교차로	1.50	-	에이스스크린골프	“
낙동강자전거우회길4L		우선도로	김해시	청아요양원	봉림교차로	1.22	-	생림119안전센터	“
낙동강자전거우회길4R		우선도로	김해시	봉림교차로	청아요양원	1.22	-	두리화학공장	“
낙동강자전거우회길5		우선도로	김해시	금곡교삼거리	봉림로 합류점	4.58	-	금곡고등학교	“

노선명	노선번호	자전거도로의 종류	도로관리청	도로구간		총길이 (km)	자전거도로 너비(m)	주요 경유지	지정 (변경·폐지) 사유
				기점	종점				
낙동강자전거우회길6L		우선도로	김해시	한림배수장	금곡교삼거리	1.48	-	시진마을회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일괄 고시
낙동강자전거우회길6R		우선도로	김해시	금곡교삼거리	한림배수장	1.48	-	한림배수장	“
낙동강자전거우회길7L		우선도로	김해시	마사 입구	모정교	3.87	-	낙동강변	“
낙동강자전거우회길7R		우선도로	김해시	모정교	마사 입구	3.87	-	생림오토캠핑장	“
낙동강자전거우회길8L		우선도로	김해시	마사 입구	생림대로 합류점	5.32	-	이작초등학교	“
낙동강자전거우회길8R		우선도로	김해시	생림대로 합류점	마사 입구	5.32	-	미사파크 골프장	“
선천남로L	대로 2-2-3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선천교차로	금관대로 합류점	1.51	1.50	SW타워	“
선천남로R	대로 2-2-3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금관대로 합류점	선천교차로	1.52	1.50	주촌농협	“
선지로87번길	소로 2-4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센텀큐시티116동 앞	센텀큐시티 입구	1.52	1.50	센텀큐시티아파트	“
일동한신진로R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금관대로 합류점	일동한신아파트	0.36	1.80	일동한신아파트	“
골든루트로IL	대로 3-1-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북측진입로	남해고속도로 하부	0.77	2.00	현대자동차서비스	“
골든루트로IR	대로 3-1-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남해고속도로 하부	북측진입로	0.68	2.00	신기소류지	“
골든루트로2L	대로 3-1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남해고속도로 하부	남측진입로	2.00	2.50	산업단지공단	“
골든루트로2R	대로 3-1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남측진입로	남해고속도로 하부	2.01	2.00	한울하이드로틱	“
선천로L	대로 1-1-6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주촌교	엘리시아아파트 입구	1.34	2.00	코스트로	“
선천로R	대로 1-1-6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엘리시아아파트 입구	주촌교	1.16	2.00	주촌119안전센터	“
서부로IL	대로 1-1-6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골든루트로 합류점	주촌교	1.30	2.00	기아오토큐	“
서부로IR	대로 1-1-6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주촌교	골든루트로 합류점	1.33	2.00	주촌농협	“
서부로2R	중로 1-39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장유육교	경남타이어 앞	0.53	1.80	양동리고분군	“
내삼로IL	대로 1-1-6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서부로 합류점	골든루트로 합류점	0.57	2.00	거북축산	“

노선명	노선번호	자전거도로의 종류	도로관리청	도로구간		총길이 (km)	자전거도로 너비(m)	주요 경유지	지정 (번경·폐지) 사유
				기점	종점				
내삼로IR	대로 1-1-6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비분리)	김해시	फल루트로 합류점	사부로 합류점	0.56	2.00	태성식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일괄 고시
진하로IL	중로 1-8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비분리)	김해시	칠산로 합류점	봉곡천 합류점	1.18	1.50	한일종합상사	"
진하로2L	중로 1-5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비분리)	김해시	이마트 앞	무점삼거리	0.11	1.50	이마트	"
칠산로L	중로 1-27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비분리)	김해시	칠산교차로	마찰교	2.28	1.50	칠산초등학교	"
칠산로R	중로 1-27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비분리)	김해시	마찰교	칠산교차로	2.82	2.70	화북공동농기계창고	"
서김해산단로IL	중로 1-1-5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비분리)	김해시	시공사앞삼거리	금관대로 합류점	1.09	4.00	서김해일반산단	"
서김해산단로IR	중로 1-1-5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비분리)	김해시	금관대로 합류점	시공사앞삼거리	1.15	3.00	세종건업	"
서김해산단로2L	중로 2-2-70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비분리)	김해시	하스로그로빌 앞	주식회사이론 앞	0.27	3.00	세인트크린	"
서김해산단로2R	중로 2-2-70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비분리)	김해시	주식회사이론 앞	하스로그로빌 앞	0.30	3.20	대정축산물직판장	"
서김해산단로3L	중로 2-2-71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비분리)	김해시	에이스 앞	보코트 앞	0.22	3.00	장진에이테크	"
서김해산단로3R	중로 2-2-71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비분리)	김해시	보코트 앞	에이스 앞	0.21	3.50	보코트	"
서김해산단안길L	중로 1-1-53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비분리)	김해시	신성일렉트로릭스	프리플 앞	1.35	3.00	대정축산물직판장	"
서김해산단안길R	중로 1-1-53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비분리)	김해시	프리플 앞	신성일렉트로릭스	1.31	3.00	대성종합전기	"
계동로IL	대로 3-3-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비분리)	김해시	번화2로 합류점	팔관로 합류점	2.50	1.80	장유농협	"
계동로IR	대로 3-3-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비분리)	김해시	팔관로 합류점	번화2로 합류점	2.46	1.80	부영5단지	"
계동로2L	중로 1-31	전용차로	김해시	부영9차삼거리	산세소리유치원삼거리	0.32	1.80	부영6단지	"
계동로2R	중로 1-31	전용차로	김해시	산세소리유치원삼거리	부영9차삼거리	0.32	1.80	부영4단지	"
계동로102번길L	중로 1-29	전용차로	김해시	계동초등학교삼거리	대청프라자삼거리	0.34	1.80	장유지구대	"
계동로102번길R	중로 1-29	전용차로	김해시	대청프라자삼거리	계동초등학교삼거리	0.34	1.80	부영4단지	"
능동로L	대로 2-3-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비분리)	김해시	능동삼거리	장유초교	1.78	2.00	삼문초등학교	"

노선명	노선번호	자전거도로의 종류	도로관리청	도로구간		총길이 (km)	자전거도로 너비(m)	주요 경유지	지정 (변경·폐지) 사유
				기점	종점				
능동로R	대로 2-3-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장유초교	능동삼거리	1.78	2.00	월산초등학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일괄 고시
대청로IL	광로 3-3-1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부영7차삼거리	장유터널	0.70	2.00	부곡초등학교	"
대청로IR	광로 3-3-1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장유터널	부영7차삼거리	0.84	2.00	부영8단지	"
대청로2L	광로 3-3-1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장유터널	덕정교	2.63	2.00	덕정초등학교	"
대청로2R	광로 3-3-1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덕정교	장유터널	2.42	2.00	관동고분공원	"
대청로210번길L	중로 1-24	전용차로	김해시	장유그린골프삼거리	번호1로 합류점	0.42	1.80	장유우리요양병원	"
대청로210번길R	중로 1-24	전용차로	김해시	번호1로 합류점	장유그린골프삼거리	0.42	1.80	능동공원	"
번호1로84번길L	중로 1-24	전용차로	김해시	번호1로 합류점	삼문체육공원삼거리	0.34	1.80	청수담	"
번호1로84번길R	중로 1-24	전용차로	김해시	삼문체육공원삼거리	번호1로 합류점	0.34	1.80	부영6단지	"
롯데위더파크길L	대로 2-3-6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철산로 합류점	장유로 합류점	1.37	2.00	롯데위더파크	"
롯데위더파크길R	대로 2-3-6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장유로 합류점	철산로 합류점	1.55	2.00	올하친	"
반룡로IL	대로 1-3-3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대청프라자사거리	장유병원사거리	0.57	2.00	누가병원	"
반룡로IR	대로 1-3-3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장유병원사거리	대청프라자사거리	0.74	1.80	대청초등학교	"
반룡로2L	대로 1-3-3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장유병원사거리	2호광장사거리	0.90	2.00	한일시멘트	"
반룡로2R	대로 1-3-3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2호광장사거리	장유병원사거리	1.03	2.00	미라주아파트	"
번호1로L	중로 1-23	전용차로	김해시	롯데마트 앞	대동양로르사거리	0.41	1.80	부영8단지	"
번호1로R	중로 1-23	전용차로	김해시	대동양로르사거리	롯데마트 앞	0.37	1.80	부영7단지	"
번호2로L	대로 2-3-3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삼문초교삼거리	장유병원사거리	0.94	2.00	축협하나로마트	"
번호2로R	대로 2-3-3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장유병원사거리	삼문초교삼거리	0.98	2.00	장유스포츠헌터	"
월산로IL	중로 1-22	전용차로	김해시	장유출장소삼거리	월산초교사거리	0.88	1.80	장유고등학교	"

노선명	노선번호	자전거도로의 종류	도로관리청	도로구간		총길이 (km)	자전거도로 너비(m)	주요 경유지	지정 (번경·폐지) 사유
				기점	종점				
월산로1R	중로 1-22	전용차로	김해시	월산초교사거리	장유출장소삼거리	0.88	1.80	월산중학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일괄 고시
월산로2L	중로 1-19	전용차로	김해시	월산8단지부영	부영3차삼거리	0.47	1.80	부영6단지	“
월산로2R	중로 1-19	전용차로	김해시	부영3차삼거리	월산8단지부영	0.71	1.80	부영9단지	“
월산로3L	중로 1-20	전용차로	김해시	장유고등학교사거리	주석초등학교 앞	0.21	1.80	주석초등학교	“
월산로3R	중로 1-20	전용차로	김해시	주석초등학교 앞	장유고등학교사거리	0.19	1.80	장유고등학교	“
유하로R	대로 1-3-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내덕중학교	내덕중S클래스	0.77	1.50	내덕중학교	“
무계로1L	대로 1-3-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외덕사거리	2호광장사거리	0.77	2.00	남명더라우2단지	“
무계로1R	대로 1-3-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2호광장사거리	외덕사거리	0.79	2.00	남명더라우1단지	“
울하로1L	대로 1-3-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관동교	울하회진교차로	1.98	2.00	김해외국어고등학교	“
울하로1R	대로 1-3-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울하회진교차로	대청IC 하부	3.60	2.00	수남고등학교	“
울하로2L	대로 2-3-8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울하회진교차로	장유교차로	0.61	1.50	모산초등학교	“
울하로2R	대로 2-3-8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장유교차로	장유교차로	0.55	1.50	장유농협	“
울하1로L	대로 3-3-10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김해외고삼거리	울하회진교차로	1.50	1.50	울상마을3단지	“
울하1로R	대로 3-3-10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울하회진교차로	김해외고삼거리	1.51	1.50	울하고등학교	“
울하3로L	대로 3-3-9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관동초등학교	모아프라자삼거리	0.98	1.50	경남제일신협	“
울하3로R	대로 3-3-9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모아프라자삼거리	관동초등학교	0.99	1.50	관동초등학교	“
울하4로L	대로 1-3-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장유로 합류점	울하로 합류점	1.24	1.50	서부문화센터	“
울하4로R	대로 1-3-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울하로 합류점	장유로 합류점	1.31	1.50	울하119안전센터	“
울하5로L	중로1-43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울하시티프라디움아파트 101동 옆	원메이지 힐스테이트 아파트 207동 옆	1.16	1.20	모산중학교	“
울하6로L	대로 3-3-1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울하4로 합류점	원메이지109동 앞	0.62	1.50	힐스테이트아파트	“

노선명	노선번호	자전거도로의 종류	도로관리청	도로구간		총길이 (km)	자전거도로 너비(m)	주요 경유지	지정 (법령·폐지) 사유
				기점	종점				
올하6로R	대로 3-3-1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비분리)	김해시	원매이저105동 앞	올하4로 합류점	0.62	1.50	원매이저자이아파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일괄 고시
장유로1L	대로 2-3-1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비분리)	김해시	서부로 합류점	부곡로 합류점	0.97	2.00	백센터이어	“
장유로1R	대로 2-3-1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비분리)	김해시	부곡로 합류점	서부로 합류점	0.89	2.00	KG모빌리티	“
장유로2L	대로 2-3-1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비분리)	김해시	부곡로 합류점	장유1동 행정복지센터 사거리	1.36	2.00	월산마을12단지	“
장유로2R	대로 2-3-1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비분리)	김해시	장유1동 행정복지센터 사거리	부곡로 합류점	1.37	2.00	석봉마을9단지	“
장유로3L	대로 1-3-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비분리)	김해시	2호광장사거리	위터파크사거리	1.68	2.00	장유중학교	“
장유로3R	대로 1-3-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비분리)	김해시	위터파크사거리	부계교	2.04	2.00	신문지구	“
장유로4R	대로 2-1-6	전용차로	김해시	화목마을물순환센터	롯데아울렛사거리	4.50	1.50	조만강	“
E편 한세상북도로L	중로 3-4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비분리)	김해시	삼문2교	장유E편한세상아파트	0.31	1.80	장유E편한세상	“
E편 한세상북도로R	중로 3-4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비분리)	김해시	장유E편한세상아파트	삼문2교	0.31	1.80	대청천	“
장유유통단지길1L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비분리)	김해시	롯데아울렛주차장삼거리	농수산물유통센터삼거리	1.06	2.00	롯데프리미엄아울렛	“
장유유통단지길1R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비분리)	김해시	농수산물유통센터삼거리	롯데아울렛주차장삼거리	1.12	2.00	신문지구	“
장유유통단지길2L	중로 1-46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비분리)	김해시	하나로마트 입구	장유로 합류점	0.41	2.40	하나로마트	“
장유유통단지길2R	중로 1-46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비분리)	김해시	장유로 합류점	하나로마트 입구	0.39	2.10	조만강생태체육공원	“
장유유통단지길3L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비분리)	김해시	칠산로 합류점	하나로마트 입구	0.36	1.50	하	“
장유유통단지길3R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비분리)	김해시	하나로마트 입구	칠산로 합류점	0.47	1.20	조만강	“
팔판로L	중로 1-30	전용차로	김해시	덕정로 합류점	덕정로4번길 합류점	0.28	1.80	올하천	“
팔판로R	중로 1-30	전용차로	김해시	덕정로4번길 합류점	덕정로4번길 합류점	0.29	1.80	팔판마을5단지	“
올하천1L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비분리)	김해시	신안교	(구)관동교	1.25	2.00	올하천변	“
올하천1R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비분리)	김해시	(구)관동교	신안교	1.33	2.00	올하천변	“

노선명	노선번호	자전거도의 종류	도로관리청	도로구간		총길이 (km)	자전거도로 너비(m)	주요 경유지	지정 (반경·폐지) 사유
				기점	종점				
울하천2L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비분리)	김해시	(구)관동교	관동교	2.19	2.00	울하천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일괄 고시
울하천2R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비분리)	김해시	관동교	(구)관동교	2.08	2.00	울하천변	“
대청천1L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비분리)	김해시	대청2교 하부	대청천교 하부	1.65	2.00	대청천변	“
대청천1R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비분리)	김해시	삼문2교 하부	계동교 하부	1.05	2.00	대청천변	“
대청천2L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비분리)	김해시	대청천교 하부	조만강	2.69	2.00	대청천변	“
대청천2R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비분리)	김해시	조만강	대청천교 하부	1.53	2.00	대청천변	“
내덕로R	중로 1-5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금관대로 합류점	신내덕로 합류점	0.13	1.50	내덕지구	“
신내덕로L	중로 2-15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외덕로 합류점	내덕로 합류점	0.13	1.50	내덕지구	“
신내덕로R	중로 2-15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내덕로 합류점	신외덕로 합류점	0.37	1.50	내덕지구	“
외덕로1L	중로 1-1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유하로 합류점	신내덕로 합류점	0.71	1.50	내덕지구	“
외덕로1R	중로 1-1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신내덕로 합류점	유하로 합류점	0.66	1.50	내덕지구	“
외덕로2L	중로 2-1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내덕로 합류점	유하로 합류점	0.92	1.50	내덕지구	“
신외덕로1L	중로 2-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외덕로 합류점	내덕로 합류점	0.37	1.50	내덕지구	“
신외덕로2L	중로 2-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외덕로 합류점	외덕로 합류점	0.15	1.50	내덕지구	“
김해대로1L	대로 1-5-3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진영삼성병원입구삼거리	부평사거리	1.86	2.00	버거킹	“
김해대로1R	대로 1-5-3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부평사거리	홍설운동장교차로	2.07	2.00	서어지공원	“
김해대로361번길L	중로 1-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김해대로 합류점	장동로 합류점	0.45	1.70	진영자이아파트	“
김해대로361번길R	중로 1-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장동로 합류점	김해대로 합류점	0.45	1.70	진영코일아파트	“
대창초진입로 L	중로 1-5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진영대창초사거리	김해대로 합류점	0.37	1.20	진영휴먼시아아파트	“
대창초진입로 R	중로 1-5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김해대로 합류점	진영대창초사거리	0.37	1.20	한일중학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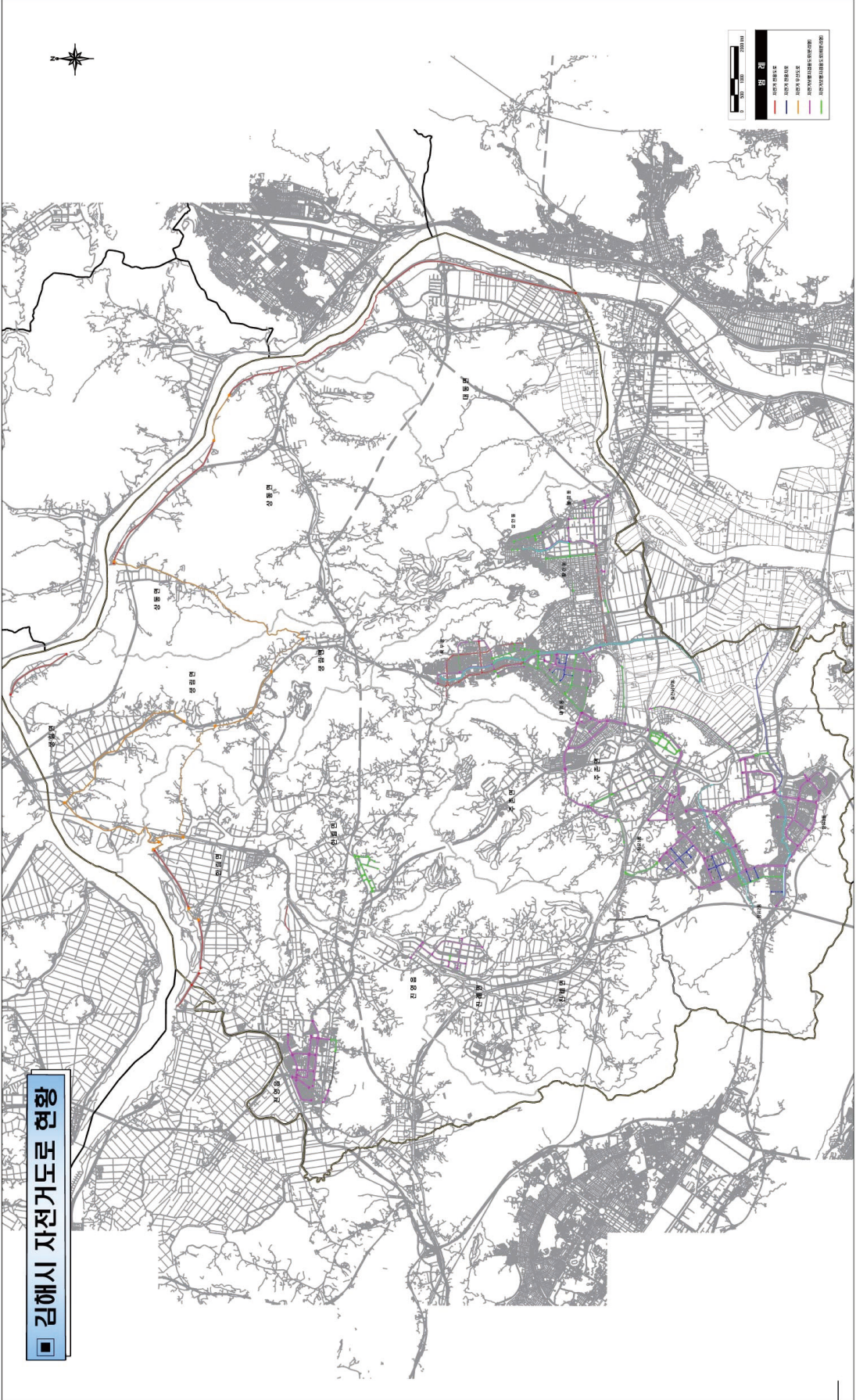
노선명	노선번호	자전거도로의 종류	도로관리청	도로구간		총길이 (km)	자전거도로 너비(m)	주요 경유지	지정 (번경·폐지) 사유
				기점	종점				
본산로L	중로 1-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진영중학교사거리	김해진영휴먼시아6단지	0.47	1.70	센텀뷰아파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일괄 고시
본산로R	중로 1-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김해진영휴먼시아6단지	진영중학교사거리	0.47	1.70	진영교회	“
센텀뷰부속도로L	중로 1-8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김해대로 합류점	본산로 합류점	0.19	2.00	센텀뷰아파트	“
센텀뷰부속도로R	중로 1-8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본산로 합류점	김해대로 합류점	0.19	2.00	진영휴먼시아6단지	“
장등로1L	대로 3-1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진산대로 합류점	경남단감농협	1.09	1.70	진영중흥S클래스1단지	“
장등로1R	대로 3-1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경남단감농협	진산대로 합류점	1.17	2.00	진영장동초등학교	“
장등로2L	중로 1-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부평사거리	경남단감농협	0.59	1.70	진영금병초등학교	“
장등로2R	중로 1-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경남단감농협	부평사거리	0.60	1.70	장동성당	“
장등로1로L	중로 1-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본산공원회진교차로	경남단감농협	0.56	2.00	본산공원	“
장등로1로R	중로 1-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경남단감농협	본산공원회진교차로	0.60	2.00	진영휴먼뷰아파트	“
장등로19번길L	중로 1-3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진영자이아파트	진영중학교사거리	0.95	1.70	진영중앙초등학교	“
장등로19번길R	중로 1-3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진영중학교사거리	진영자이아파트	0.91	1.70	진영중학교	“
중흥S클래스진입로 L	중로 1-1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진산대로 합류점	중흥S클래스 진입도로 종점	0.92	2.10	추천강	“
중흥S클래스진입로 R	중로 1-1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중흥S클래스 진입도로 종점	진산대로 합류점	0.92	2.10	진영이진캐스빌아파트	“
진산대로L	대로 1-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공설운동장교차로	추천교	0.63	2.00	진영이진캐스빌아파트	“
진산대로R	대로 1-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추천교	공설운동장교차로	0.63	2.00	진영중앙초등학교	“
진영산북로1L	중로 2-8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진영식재마트	삼성타워아파트	0.41	1.30	진영동문굿모닝빌1차	“
진영산북로1R	중로 2-8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삼성타워아파트	부곡IC삼거리	0.26	1.30	진영동문굿모닝빌2차	“
진영산북로2L	중로 2-8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진영대창초사거리	대영타워맨션	0.49	3.50	장북2차아파트	“
진영산북로2R	중로 2-8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김해시	대영타워맨션	진영대창초사거리	0.49	3.50	진영대창초등학교	“



노선명	노선번호	자전거도로의 종류	도로관리청	도로구간		총길이 (km)	자전거도로 너비(m)	주요 경유지	지정 (변경·폐지) 사유
				기점	종점				
병동산단로1L	중로 2-2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비분리)	김해시	김해대로974번길	병동산단안길	0.83	3.00	쌍곡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법에 따른 일괄 고시
병동산단로1R	중로 2-2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비분리)	김해시	병동산단안길	김해대로974번길	0.86	2.80	우정병영	“
병동산단로2L	중로 2-23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비분리)	김해시	김해대로	병동산단로	0.11	3.00	명인아이에이치	“
병동산단로2R	중로 2-23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비분리)	김해시	병단산단로	김해대로	0.10	2.70	대덕PVC상사	“
병동산단로3L	소로 2-78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비분리)	김해시	김해대로	병단산단로	0.12	3.00	제이에프코리아아제2공장	“
병동산단안길L	중로 2-28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비분리)	김해시	병단산단로	병단산단로	0.21	2.50	병동산단	“
병동산단안길R	중로 2-29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비분리)	김해시	병단산단로	병단산단로	0.42	2.50	스타에어테크	“
병동산단로 1L	중로 1-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비분리)	김해시	김해대로	조광포장산업 앞	0.60	3.00	빅메탈	“
병동산단로 1R	중로 1-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비분리)	김해시	동우공업 앞	김해대로	0.36	2.50	한국엘앤티증공업	“
병동산단로 2L	중로 2-3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비분리)	김해시	병동산단로	병동산단안길	0.21	3.60	베스트커플리	“
병동산단안길 L	중로 2-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비분리)	김해시	병동산단로	강진플랜트 앞	0.73	3.50	신성에이치씨	“
김해대로병동산단안L	중로 1-98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비분리)	김해시	정광테크 위	병동산단로	0.38	3.50	신성에이치씨	“
테크로밸리로2R	중로 1-6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비분리)	김해시	고모삼거리	고모교	0.47	1.50	CU	“
테크로밸리로2R	중로 1-8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비분리)	김해시	케이피항공산업 앞	아이엔테크사거리	1.31	1.00	교촌에프엔비물류센터	“
테크로밸리로1L	중로 1-10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비분리)	김해시	동아HH 앞	고모로 합류점	1.40	1.00	경원테크	“
테크로밸리로2R	중로 1-1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비분리)	김해시	고모로 합류점	진례역	0.73	1.00	진혜테크로밸리푸드상장	“
테크로밸리로99번1R	중로 2-2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비분리)	김해시	테크노밸리로	테크노밸리1번교차로	0.11	1.00	지인테크	“
테크로밸리로99번2R	중로 1-13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비분리)	김해시	고모천	테크로밸리로	0.11	4.00	홍정칠강	“

※ 자전거도로 노선 현황은 김해시 교통혁신과(☎055-330-2722), 도로과(☎055-330-4669)에서 열람가능합니다.

■ 김해시 자전거도로 현황



##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1-8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1-8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6일

### 김 해 시 장

- 사업시행지의 위치 : 김해시 삼계동 120-7번지 일원(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1-8호선)사업
  - 사업의 명칭 : 북부우회도로(대로3-1-8호선) 개설공사
-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시설명(도로)	도시계획결정		금회 시행규모			비고
	연장(m)	폭(m)	연장(m)	폭(m)	면적	
대로3-1-8호선	1,163	25~35	378.4	25~29	13,326	경고 제1999-39호 (1999.03.04.)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김해시장(도로과장)
  - 주 소 :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 사업기간(변경)
  - 당 초 : 2019. 05. 03. ~ 2024. 05. 02.
  - 변 경 : 2019. 05. 03. ~ 2024. 12. 31.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 불임
-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사유
  -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 관계도면 : 실음생략 【김해시청 도시계획과(☎055-330-3595) 및 도로과(☎055-330-3834)】 비치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리의 종류 및내용	
1	삼계동	820	도	2,681	467	김해시					
2	"	832-13	전	4	4	김해시					
3	"	832-12	전	1	1	김해시					
4	"	832-11	전	772	772	김해시					
5	"	832	전	239	151	김해시					
6	"	산180-1	임	10	10	김해시					
7	"	산85-9	임	888	888	김해시					
8	"	산85-1	임	7,473	189	김*애 김*철 박*만	경상남도 김해시 구지로***번길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 ***동****호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 **, ***동 ****호				
9	"	산180	임	1,484	130	김해시					
10	"	833-1	답	48	48	김해시					
11	"	834-1	전	332	332	김해시					
12	"	833	답	673	120	이*기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율하동, 율상마을**** *단지)				
13	"	산 120-16	임	2,421	2,421	김해시					
14	"	산 120-17	임	645	645	박*대	부산광역시 남구 **동 ***~*				
15	"	산 120-15	임	207	207	김해시					
16	"	산 120-14	임	64	64	김해시					
17	"	산179-4	임	1,708	1,708	김해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상 면 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관 리 의 종 류 및 내 용	
18	"	산 120-18	임	269	30	엄*섭 김*숙	경상남도 김해시 경원로 **, ***동***호(내동, 경원마을**아파트)				
19	"	산 120-21	임	2,135	2,135	김해시					
20	"	산120-7	임	1,551	14	엄*섭 김*숙	경상남도 김해시 경원로 **, ***동***호(내동, 경원마을**아파트)				
21	"	산120-19	임	64	50	김해시					
22	"	734-1	전	11	7	김해시					
23	"	733-4	전	31	11	김해시					
24	"	1344-184	천	969	174	환경부	국				
25	"	840-2	천	7	7	김해시					
26	"	839-6	천	3	3	김해시					
27	"	840-1	답	112	112	김해시					
28	"	840-3	답	265	265	김해시					
29	"	840-4	천	82	82	김해시					
30	"	839-7	답	60	60	김해시					
31	"	839-8	답	44	44	김해시					
32	"	839-4	답	320	320	김해시					
33	"	1344-198	천	107	107	김해시					
34	"	838-2	도	274	113	경상남도					
35	"	838-5	도	22	22	경상남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상 면 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 리 의 종 류 및 내 용	
36	"	1343	도	993	58	국	국토교통부				
37	"	1343-2	도	103	103	국	국토교통부				
38	"	850-1	도	5,352	90	경상남도					
39	"	850-8	도	67	67	경상남도					
40	"	850-7	도	64	64	경상남도					
41	"	850-9	도	20	20	경상남도					
42	"	1344-182	천	727	628	환경부	국				
43	"	1344-196	천	170	170	김해시					
44	"	731-1	답	63	3	김해시					
45	"	730-8	답	275	119	김해시					
46	"	841	답	60	45	김해시					
47	"	1345-6	도	46	46	김해시					
48	"	725-6	도	164	32	경상남도					
49	"	725-7	도	99	99	경상남도					
50	"	725-8	도	55	55	김해시					
51	"	728-1	대	95	14	김해시					

**김해 내덕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20차 변경) 수립, 실시계획(16차 변경) 인가 고시**

김해시 고시 제2023-447호(2023. 12. 21.)로 개발계획(19차 변경) 수립, 실시계획(15차 변경) 인가 고시된 김해 내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김해시청(도시개발과)에 비치된 관계 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16일**

**김 해 시 장**

- I. 김해 내덕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수립 : 붙임
- II. 김해 내덕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 붙임
- III. 관련도면 : 게재 생략

**I. 개발계획(변경) 수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김해 내덕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내덕동 28-4번지 일원
- 면 적 : 540,931.6㎡

**3. 도시개발사업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장래 도시발전에 대비한 계획적인 개발로 준주거용지 및 도시기반시설용지의 조기 확보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도모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내덕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부곡로70, 가동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기간 : 2013. 3. 14. ~ 2024. 12. 31.
- 시행방식 :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토지이용계획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합 계		540,931.6	100.0	
주거용지	소 계	306,251.4	56.6	
	단독주택	125,649.6	23.2	
	공동주택	125,780.1	23.3	
	준주거시설	54,821.7	10.1	
근린상업용지		18,064.1	3.3	
도시기반 시설용지	소 계	215,650.2	39.9	
	학 교	12,496.2	2.3	
	주 차 장	6,260.0	1.2	
	공 원	17,154.8	3.2	
	녹 지	38,922.6	7.2	
	광 장	2,033.4	0.4	
	유 수 지	8,931.2	1.6	
	도 로	129,852.0	24.0	
기타시설용지	공공청사	965.9	0.2	

나.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도로(변경없음)

- 총괄표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64	11,218	129,852.0	18	5,556	47,968.4	19	3,726	62,488.7	27	1,936	19,394.9
대로	1	92	292.1	1	92	292.1	-	-	-	-	-	-
중로	17	6,181	85,094.1	3	2,284	23,914.9	10	2,740	46,854.2	4	1,157	14,325.0
소로	46	4,945	44,465.8	13	2,310	23,761.4	10	1,856	15,634.5	23	779	5,069.9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종로	2	54	17.5	주간선 도로	870	소1-79	대1-3-2	일반 도로	-	93.02.27	김해시 고시 제2020-179호
기정	대로	1	1-3	35~ 38.5	주간선 도로	3,910 (92)	대3-1	구역계	일반 도로	-	96.08.12	
기정	종로	1	44	23	집산 도로	784	대1-3-2	내덕동 80구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종로	1	45	20~ 21.5	집산 도로	235	내덕동 503-3천	내덕동 30-1답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종로	1	5	20 ~25	집산 도로	1,265	대1-2	대3-2	일반 도로	-	98.12.23	
기정	종로	2	34	15	집산 도로	652	대1-3-2	중2-46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종로	2	35	15	집산 도로	329	중1-44	내덕동 10-7답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종로	2	36	15	집산 도로	161	중1-44	중1-5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종로	2	37	18	집산 도로	172	중1-44	중2-34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종로	2	38	18	집산 도로	89	중1-44	2호 주차장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종로	2	39	15	집산 도로	113	중1-44	중1-5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종로	2	40	15	집산 도로	46	내덕동 6-2답	내덕동 6-1답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종로	2	46	18	집산 도로	188	중2-34	중2-38	일반 도로	-	15.11.27	
기정	종로	2	47	15	집산 도로	120	중1-44	중2-46	일반 도로	-	15.11.27	
기정	종로	3	53	12	집산 도로	657	중1-45	중2-40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종로	3	54	12	집산 도로	48	중1-45	소1-123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종로	3	55	12	집산 도로	274	중1-45	1호 유수지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종로	3	84	13.5	집산 도로	178	내덕동 39-11답	중2-39	일반 도로	-	20.12.30	
기정	소로	1	111	10	국지 도로	212	중2-35	중2-34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소로	1	112	10	국지 도로	141	중2-35	중2-37	일반 도로	-	13.03.14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13	10	국지 도로	210	소1-112	소1-112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소로	1	114	10	국지 도로	142	소1-112	소1-112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소로	1	115	10	국지 도로	319	중2-36	중2-36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소로	1	116	10	국지 도로	193	중2-36	중2-36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소로	1	118	10	국지 도로	154	중1-44	중2-38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소로	1	119	10	국지 도로	219	내덕동 39-14답	소2-367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소로	1	120	10	국지 도로	123	중3-53	소2-368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소로	1	121	10	국지 도로	157	소1-120	소2-369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소로	1	122	10	국지 도로	120	소1-123	소2-369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소로	1	123	10	국지 도로	189	중3-53	소2-368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소로	1	124	10	국지 도로	131	중3-55	소2-372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소로	2	365	8	국지 도로	101	소1-115	소1-115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소로	2	366	8	국지 도로	191	소1-119	소1-119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소로	2	367	8	국지 도로	391	소1-119	내덕동 419전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소로	2	368	8	국지 도로	509	중3-53	소1-123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소로	2	369	8	국지 도로	111	중3-53	소2-368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소로	2	370	8	국지 도로	120	소1-124	소2-372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소로	2	371	8	국지 도로	153	중3-55	소2-372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소로	2	372	8	국지 도로	237	중3-55	소1-124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소로	2	381	8	국지 도로	31	소1-119	내덕동 97-4구	일반 도로	-	15.11.27	
기정	소로	2	382	8	국지 도로	12	대로1-2	소2-367	일반 도로	-	15.11.27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323	6	특수 도로	35	중2-34	소1-113	보행자 도로	-	13.03.14	
기정	소로	3	324	6	특수 도로	30	중1-44	소1-115	보행자 도로	-	13.03.14	
기정	소로	3	325	6	특수 도로	30	내덕동 80-12구	소2-367	보행자 도로	-	13.03.14	
기정	소로	3	326	6	특수 도로	57	중1-5	소2-367	보행자 도로	-	13.03.14	
기정	소로	3	329	4	특수 도로	79	중3-53	소2-368	보행자 도로	-	13.03.14	
기정	소로	3	330	6	특수 도로	48	중1-45	소1-123	보행자 도로	-	13.03.14	
기정	소로	3	331	6	특수 도로	50	중1-45	소1-124	보행자 도로	-	13.03.14	
기정	소로	3	332	6	국지 도로	26	소2-366	유수지 2호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소로	3	341	6	특수 도로	20	대1-2	소2-367	보행자 도로	-	15.11.27	
기정	소로	3	342	6	특수 도로	17	대1-2	소2-367	보행자 도로	-	15.11.27	
기정	소로	3	343	6	특수 도로	30	중1-5	소1-115	보행자 도로	-	16.02.26	
기정	소로	3	344	6	국지 도로	38	소2-368	가구번호 A32-1	일반 도로	-	17.06.09	
기정	소로	3	345	6	국지 도로	26	소2-368	가구번호 A33	일반 도로	-	17.06.09	
기정	소로	3	346	6	국지 도로	29	소1-122	가구번호 A37-2	일반 도로	-	17.06.09	
기정	소로	3	347	6	국지 도로	39	소1-123	가구번호 A37-2	일반 도로	-	17.06.09	
기정	소로	3	348	6	국지 도로	20	소2-368	가구번호 A38-1	일반 도로	-	17.06.09	
기정	소로	3	349	6	국지 도로	24	소1-122	가구번호 A38-1	일반 도로	-	17.06.09	
기정	소로	3	350	6	국지 도로	25	소1-122	가구번호 A38-1	일반 도로	-	17.06.09	
기정	소로	3	351	6	국지 도로	14	소1-116	가구번호 A16	일반 도로	-	17.06.09	
기정	소로	3	352	6	국지 도로	24	중2-47	가구번호 A48-1	일반 도로	-	17.06.09	
기정	소로	3	353	6	국지 도로	44	소1-118	가구번호 A20-2	일반 도로	-	17.06.09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392	6	국지 도로	21	중2-34	내덕동 3-10답	일반 도로	-	18.12.28	
기정	소로	3	393	6	특수 도로	53	중2-40	내덕동 69구	보행자 도로	-	18.12.28	

○ 주차장(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합계		5개소	-	6,260.0	-	
기정	3-42	노외주차장	내덕동 32-8번지 일원	899.0	2009. 12.31	
기정	3-43	노외주차장	내덕동 34-5번지 일원	2,612.4	2009. 12.31	
기정	3-44	노외주차장	내덕동 24-11번지 일원	880	2009. 12.31	
기정	3-45	노외주차장	내덕동 25-4번지 일원	1,012.6	2009. 12.31	
기정	3-71	노외주차장	내덕동 39-6번지 일원	856.0	2020. 12.30	

○ 광장(변경없음)  
- 광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합계		2개소	-	-	2,033.4	-	
기정	3-8	광장	역전광장	내덕동 28-14번지 일원	1,020.3	2015. 11.27	
기정	3-9	광장	역전광장	내덕동 33-2번지 일원	1,013.1	2015. 11.27	

○ 공원(변경없음)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합계		6개소	-	-	17,154.8	-	
기정	3-81	공원	어린이공원	내덕동 38-6번지 일원	4,327.5	2009.12.31	
기정	3-83	공원	어린이공원	내덕동 52-1번지 일원	2,461.4	2009.12.31	
기정	3-73	공원	어린이공원	내덕동 20-11번지 일원	2,048.7	2009.12.31	
기정	3-74	공원	어린이공원	내덕동 30-14번지 일원	2,012.0	2009.12.31	
기정	3-75	공원	소공원	내덕동 11-13번지 일원	5,009.1	2009.12.31	
기정	3-82	공원	소공원	내덕동 39-16번지 일원	1,296.1	2009.12.31	

○ 녹지(변경없음)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합계	-	5개소	-	-	167,123.0 (38,922.6)	-	
기정	1	녹지	완충 녹지	대로1-3-2호선변 녹지	136,399.0 (11,311.5)	-	
기정	3-60	녹지	완충 녹지	대로1-2호선변 녹지	4,280.2	2009.12.31	
기정	3-61	녹지	완충 녹지	신항만 철도변 녹지	16,551.0	2009.12.31	
기정	3-62	녹지	경관 녹지	유하천 주변 녹지	5,142.2	2009.12.31	
기정	3-63	녹지	경관 녹지	내덕동 80번지 일원	1,637.7	2013.03.14	

( ) : 구역내 편입녹지 면적

- 학교(변경 없음)
- 학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3-43	학교	초등학교	내덕동 7-8번지 일원	12,496.2	2009.12.31	

- 공공청사(변경 없음)
- 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3-2	공공청사	-	내덕동 6-7번지 일원	965.9	2020.12.30	

- 유수지(변경 없음)
- 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합계	-	2개소	-	-	8,931.2	-	
기정	3-3	유수지	저류시설	내덕동 30-16번지 일원	7,723.4	2009.12.31	
기정	3-4	유수지	유수시설	내덕동 35-1번지 일원	1,207.8	2013.3.14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환지방식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8.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해당 없음)

9.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변경 없음)

- 개발계획 수립·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 10. 기타사항(변경)

- 재원조달계획(변경)

구 분	금 액(원)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사 업 비	128,000,000,000	증) 18,541,972,729	146,541,972,729	

## 11. 관계도서의 열람방법(변경없음)

- 「도시개발법」 제9조에 따라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한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당해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김해시장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 일반인에게 공람

## 12.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1】 참조

## II. 실시계획(변경)인가

###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김해 내덕지구 도시개발사업

###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장래 도시발전에 대비한 계획적인 개발로 준주거용지 및 도시기반시설용지의 조기 확보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도모

###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내덕동 28-4번지 일원
- 면 적 : 540,931.6㎡

### 4. 시행자(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내덕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부곡로70, 가동

### 5. 시행기간(변경)

- 시행기간 : 2013. 3. 14. ~ 2024. 12. 31.

### 6. 시행방식(변경없음)

- 사업방식 : 환지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 【붙임1】 참조

8. 기타사항(변경)

○ 재원조달계획(변경)

구 분	금 액(원)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사 업 비	128,000,000,000	증) 18,541,972,729	146,541,972,729	

9.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도시개발법 제18조에 따라 인가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고, 김해시 도시개발과 (전화 : 055-330-3616)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Ⅲ. 관련도면 : 게재 생략



**【붙임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I.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 총괄표(변경없음)

- 게재 생략

○ 내덕지구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계	540,931.6	-	540,931.6	100.0	경상남도 고시 제2009-668호 (2009.12.31)
주 거 지 역	508,297.8	-	508,297.8	94.0	
제1종일반주거지역	249,124.8	-	249,124.8	46.1	
제3종일반주거지역	167,930.6	-	167,930.6	31.0	
준주거지역	91,242.4	-	91,242.4	16.9	
상 업 지 역	32,633.8	-	32,633.8	6.0	
근린상업지역	32,633.8	-	32,633.8	6.0	

**② 도시개발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m <sup>2</sup> )	비고
기정	1	내덕지구 도시개발구역	경상남도 김해시 내덕동 28-4답 일원	540,931.6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③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1) 도로(변경없음)

▪ 총괄표

류별	합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m <sup>2</sup> )	노선수	연장(m)	면적(m <sup>2</sup> )	노선수	연장(m)	면적(m <sup>2</sup> )	노선수	연장(m)	면적(m <sup>2</sup> )
합계	64	11,218	129,852.0	18	5,556	47,968.4	19	3,726	62,488.7	27	1,936	19,394.9
대로	1	92	292.1	1	92	292.1	-	-	-	-	-	-
중로	17	6,181	85,094.1	3	2,284	23,914.9	10	2,740	46,854.2	4	1,157	14,325.0
소로	46	4,945	44,465.8	13	2,310	23,761.4	10	1,856	15,634.5	23	779	5,069.9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종로	2	54	17.5	주간선 도로	870	소1-79	대1-3-2	일반 도로	-	93.02.27	김해시 고시 제2020-179호
기정	대로	1	1-3	35~ 38.5	주간선 도로	3,910 (92)	대3-1	구역계	일반 도로	-	96.08.12	
기정	종로	1	44	23	집산 도로	784	대1-3-2	내덕동 80구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종로	1	45	20~ 21.5	집산 도로	235	내덕동 503-3천	내덕동 30-1답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종로	1	5	20 ~25	집산 도로	1,265	대1-2	대3-2	일반 도로	-	98.12.23	
기정	종로	2	34	15	집산 도로	652	대1-3-2	중2-46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종로	2	35	15	집산 도로	329	중1-44	내덕동 10-7답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종로	2	36	15	집산 도로	161	중1-44	중1-5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종로	2	37	18	집산 도로	172	중1-44	중2-34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종로	2	38	18	집산 도로	89	중1-44	2호 주차장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종로	2	39	15	집산 도로	113	중1-44	중1-5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종로	2	40	15	집산 도로	46	내덕동 6-2답	내덕동 6-1답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종로	2	46	18	집산 도로	188	중2-34	중2-38	일반 도로	-	15.11.27	
기정	종로	2	47	15	집산 도로	120	중1-44	중2-46	일반 도로	-	15.11.27	
기정	종로	3	53	12	집산 도로	657	중1-45	중2-40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종로	3	54	12	집산 도로	48	중1-45	소1-123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종로	3	55	12	집산 도로	274	중1-45	1호 유수지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종로	3	84	13.5	집산 도로	178	내덕동 39-11답	중2-39	일반 도로	-	20.12.30	
기정	소로	1	111	10	국지 도로	212	중2-35	중2-34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소로	1	112	10	국지 도로	141	중2-35	중2-37	일반 도로	-	13.03.14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13	10	국지 도로	210	소1-112	소1-112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소로	1	114	10	국지 도로	142	소1-112	소1-112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소로	1	115	10	국지 도로	319	중2-36	중2-36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소로	1	116	10	국지 도로	193	중2-36	중2-36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소로	1	118	10	국지 도로	154	중1-44	중2-38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소로	1	119	10	국지 도로	219	내덕동 39-14답	소2-367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소로	1	120	10	국지 도로	123	중3-53	소2-368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소로	1	121	10	국지 도로	157	소1-120	소2-369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소로	1	122	10	국지 도로	120	소1-123	소2-369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소로	1	123	10	국지 도로	189	중3-53	소2-368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소로	1	124	10	국지 도로	131	중3-55	소2-372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소로	2	365	8	국지 도로	101	소1-115	소1-115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소로	2	366	8	국지 도로	191	소1-119	소1-119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소로	2	367	8	국지 도로	391	소1-119	내덕동 419전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소로	2	368	8	국지 도로	509	중3-53	소1-123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소로	2	369	8	국지 도로	111	중3-53	소2-368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소로	2	370	8	국지 도로	120	소1-124	소2-372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소로	2	371	8	국지 도로	153	중3-55	소2-372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소로	2	372	8	국지 도로	237	중3-55	소1-124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소로	2	381	8	국지 도로	31	소1-119	내덕동 97-4구	일반 도로	-	15.11.27	
기정	소로	2	382	8	국지 도로	12	대로1-2	소2-367	일반 도로	-	15.11.27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323	6	특수 도로	35	중2-34	소1-113	보행자 도로	-	13.03.14	
기정	소로	3	324	6	특수 도로	30	중1-44	소1-115	보행자 도로	-	13.03.14	
기정	소로	3	325	6	특수 도로	30	내덕동 80-12구	소2-367	보행자 도로	-	13.03.14	
기정	소로	3	326	6	특수 도로	57	중1-5	소2-367	보행자 도로	-	13.03.14	
기정	소로	3	329	4	특수 도로	79	중3-53	소2-368	보행자 도로	-	13.03.14	
기정	소로	3	330	6	특수 도로	48	중1-45	소1-123	보행자 도로	-	13.03.14	
기정	소로	3	331	6	특수 도로	50	중1-45	소1-124	보행자 도로	-	13.03.14	
기정	소로	3	332	6	국지 도로	26	소2-366	유수지 2호	일반 도로	-	13.03.14	
기정	소로	3	341	6	특수 도로	20	대1-2	소2-367	보행자 도로	-	15.11.27	
기정	소로	3	342	6	특수 도로	17	대1-2	소2-367	보행자 도로	-	15.11.27	
기정	소로	3	343	6	특수 도로	30	중1-5	소1-115	보행자 도로	-	16.02.26	
기정	소로	3	344	6	국지 도로	38	소2-368	가구번호 A32-1	일반 도로	-	17.06.09	
기정	소로	3	345	6	국지 도로	26	소2-368	가구번호 A33	일반 도로	-	17.06.09	
기정	소로	3	346	6	국지 도로	29	소1-122	가구번호 A37-2	일반 도로	-	17.06.09	
기정	소로	3	347	6	국지 도로	39	소1-123	가구번호 A37-2	일반 도로	-	17.06.09	
기정	소로	3	348	6	국지 도로	20	소2-368	가구번호 A38-1	일반 도로	-	17.06.09	
기정	소로	3	349	6	국지 도로	24	소1-122	가구번호 A38-1	일반 도로	-	17.06.09	
기정	소로	3	350	6	국지 도로	25	소1-122	가구번호 A38-1	일반 도로	-	17.06.09	
기정	소로	3	351	6	국지 도로	14	소1-116	가구번호 A16	일반 도로	-	17.06.09	
기정	소로	3	352	6	국지 도로	24	중2-47	가구번호 A48-1	일반 도로	-	17.06.09	
기정	소로	3	353	6	국지 도로	44	소1-118	가구번호 A20-2	일반 도로	-	17.06.09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392	6	국지 도로	21	중2-34	내덕동 3-10답	일반 도로	-	18.12.28	
기정	소로	3	393	6	특수 도로	53	중2-40	내덕동 69구	보행자 도로	-	18.12.28	

2) 주차장(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합계		5개소	-	6,260.0	-	
기정	3-42	노외주차장	내덕동 32-8번지 일원	899.0	2009. 12.31	
기정	3-43	노외주차장	내덕동 34-5번지 일원	2,612.4	2009. 12.31	
기정	3-44	노외주차장	내덕동 24-11번지 일원	880	2009. 12.31	
기정	3-45	노외주차장	내덕동 25-4번지 일원	1,012.6	2009. 12.31	
기정	3-71	노외주차장	내덕동 39-6번지 일원	856.0	2020. 12.30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1) 광장(변경없음)

▪ 광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합계		2개소	-	-	2,033.4	-	
기정	3-8	광장	역전광장	내덕동 28-14번지 일원	1,020.3	2015. 11.27	
기정	3-9	광장	역전광장	내덕동 33-2번지 일원	1,013.1	2015. 11.27	

2) 공원(변경없음)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합계		6개소	-	-	17,154.8	-	
기정	3-81	공원	어린이공원	내덕동 38-6번지 일원	4,327.5	2009.12.31	
기정	3-83	공원	어린이공원	내덕동 52-1번지 일원	2,461.4	2009.12.31	
기정	3-73	공원	어린이공원	내덕동 20-11번지 일원	2,048.7	2009.12.31	
기정	3-74	공원	어린이공원	내덕동 30-14번지 일원	2,012.0	2009.12.31	
기정	3-75	공원	소공원	내덕동 11-13번지 일원	5,009.1	2009.12.31	
기정	3-82	공원	소공원	내덕동 39-16번지 일원	1,296.1	2009.12.31	

3) 녹지(변경없음)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합계	-	5개소	-	-	167,123.0 (38,922.6)	-	
기정	1	녹지	완충 녹지	대로1-3-2호선변 녹지	136,399.0 (11,311.5)	-	
기정	3-60	녹지	완충 녹지	대로1-2호선변 녹지	4,280.2	2009.12.31	
기정	3-61	녹지	완충 녹지	신항만 철도변 녹지	16,551.0	2009.12.31	
기정	3-62	녹지	경관 녹지	유하천 주변 녹지	5,142.2	2009.12.31	
기정	3-63	녹지	경관 녹지	내덕동 80번지 일원	1,637.7	2013.03.14	

( ) : 구역내 편입녹지 면적

다.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1) 학교(변경없음)

▪ 학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3-43	학교	초등학교	내덕동 7-8번지 일원	12,496.2	2009. 12.31	

2) 공공청사(변경없음)

▪ 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3-2	공공청사	-	내덕동 6-7번지 일원	965.9	2020. 12.30	

라. 방재시설(변경없음)

1) 유수지(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합계	-	2개소	-	-	8,931.2	-	
기정	3-3	유수지	저류시설	내덕동 30-16번지 일원	7,723.4	2009. 12.31	
기정	3-4	유수지	유수시설	내덕동 35-1번지 일원	1,207.8	2013. 3.14	



## II.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m <sup>2</sup> )	비고
기정	1	내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경상남도 김해시 내덕동 28-4답 일원	540,931.6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1.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세분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m <sup>2</sup>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540,931.6	-	540,931.6	100.0	경상남도 고시 제2009-668호 (2009.12.31)
주거지역	508,297.8	-	508,297.8	94.0	
제1종일반주거지역	249,124.8	-	249,124.8	46.1	
제3종일반주거지역	167,930.6	-	167,930.6	31.0	
준주거지역	91,242.4	-	91,242.4	16.9	
상업지역	32,633.8	-	32,633.8	6.0	
근린상업지역	32,633.8	-	32,633.8	6.0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구번호	가구		비 고
	위치	면적(㎡)	
A1-1	유하동 707번지 일원	382.4	
A1-2	유하동 708-9번지 일원	206.5	
A2-1	내덕동 10-2번지 일원	7,792.0	
A2-2	내덕동 23-4번지 일원	2,652.6	
A3-1	유하동 747-1번지 일원	8,383.4	
A3-2	내덕동 27-3번지 일원	104,325.1	
A4	내덕동 37-5번지 일원	3,454.0	
A5-1	내덕동 42-1번지 일원	2,545.7	
A5-2	내덕동 37-2번지 일원	6,432.8	
A5-3	내덕동 43-4번지 일원	2,395.9	
A6	내덕동 42-1번지 일원	4,839.2	
A7	내덕동 38-1번지 일원	3,273.1	
A8	내덕동 23-10번지 일원	1,776.3	
A9	내덕동 23-41번지 일원	6,655.9	
A10	내덕동 28-4번지 일원	6,958.3	
A11-2	내덕동 28-7번지 일원	1,288.2	
A11-3	내덕동 28-8번지 일원	3,316.6	
A12	내덕동 28-6번지 일원	3,581.2	
A13-1	내덕동 32-7번지 일원	932.0	
A13-2	내덕동 32-8번지 일원	899.0	
A14-1	내덕동 32-5번지 일원	5,648.2	
A14-2	내덕동 32-10번지 일원	2,239.0	
A15-1	내덕동 38-5번지 일원	2,290.5	
A15-2	내덕동 38-7번지 일원	4,327.5	
A15-3	내덕동 43-4번지 일원	1,605.8	
A16	내덕동 38-5번지 일원	3,720.5	
A17-1	내덕동 32-13번지 일원	11,490.7	
A17-2	내덕동 28-20번지 일원	1,020.3	

가구번호	가구		비 고
	위치	면적(m <sup>2</sup> )	
A18	내덕동 80번지 일원	1,637.7	
A19	내덕동 38-69번지 일원	2,542.3	
A20-1	내덕동 34-5번지 일원	2,612.4	
A20-2	내덕동 34-9번지 일원	3,517.5	
A21	내덕동 34-4번지 일원	6,316.4	
A22-1	내덕동 39-25번지 일원	10,514.5	
A22-2	내덕동 39-25번지 일원	7,288.4	
A22-3	내덕동 39-6번지 일원	856	
A23-1	내덕동 35-1번지 일원	860.9	
A23-2	내덕동 41번지 일원	1,117.7	
A23-3	내덕동 34-13번지 일원	3,625.1	
A23-4	내덕동 35-1번지 일원	1,207.8	
A23-5	내덕동 41번지 일원	629.8	
A24-1	내덕동 39-16번지 일원	1,296.1	
A24-2	내덕동 41번지 일원	1,941.7	
A25	내덕동 39-13번지 일원	2,602.7	
A26	내덕동 49-3번지 일원	5,604.5	
A27	내덕동 49-1번지 일원	8,690.8	
A28-1	내덕동 52-1번지 일원	2,461.4	
A28-2	내덕동 51-3번지 일원	1,248.6	
A29	내덕동 51-9번지 일원	1,164.3	
A30	내덕동 52-4번지 일원	2,197.3	
A31-1	내덕동 6-1번지 일원	1,039.1	
A31-2	내덕동 18번지 일원	3,645.0	
A32-1	내덕동 6-4번지 일원	2,610.4	
A32-2	내덕동 6-4번지 일원	954.4	
A32-3	내덕동 11-13번지 일원	5,009.1	
A32-4	내덕동 24-6번지 일원	1,681.8	
A33-1	내덕동 6-7번지 일원	3,262.4	
A33-2	내덕동 6-7번지 일원	965.9	
A34	내덕동 6-10번지 일원	12,496.2	
A35	내덕동 7-5번지 일원	7,871.2	
A36	내덕동 20-5번지 일원	6,998.9	
A37-1	내덕동 20-11번지 일원	2,048.7	

가구번호	가구		비 고
	위치	면적(m <sup>2</sup> )	
A37-2	내덕동 20-14번지 일원	5,624.3	
A38-1	내덕동 24-9번지 일원	6,967.8	
A38-2	내덕동 24-11번지 일원	880.0	
A39	내덕동 14번지 일원	4,315.6	
A40	내덕동 25-1번지 일원	4,355.7	
A41	내덕동 29-13번지 일원	571.9	
A42-1	주촌면 농소리 510-44번지 일원	21,455.0	
A42-2	주촌면 농소리 412-4번지 일원	1,497.2	
A42-3	내덕동 30-16번지 일원	7,723.4	
A42-4	내덕동 30-13번지 일원	2,012.0	
A42-5	내덕동 30-11번지 일원	1,634.4	
A43	내덕동 30-4번지 일원	5,422.8	
A44	내덕동 30-3번지 일원	550.4	
A45-1	내덕동 25-4번지 일원	1,012.6	
A45-2	내덕동 30-8번지 일원	5,112.4	
A46	내덕동 30-12번지 일원	4,504.0	
A47	내덕동 30-19번지 일원	5,985.3	
A48-1	내덕동 33-3번지 일원	6,573.4	
A48-2	내덕동 33-2번지 일원	1,013.1	
A49	내덕동 49-5번지 일원	918.6	
합 계	-	411,079.6	

※ 획지의 경우 향후 환지계획 수립후 환지계획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도 있음

###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 단독주택용지(변경)

용지 구분	가구번호	구분	비고	
단독주택용지	A4, A5-2, A5-3, A6, A27, A7, A28-2, A10, A32-1, A11-2, A33, A12, A35, A13-1, A36, A14-1, A37-2, A15-1, A38-1, A15-3, A39, A16, A42-5, A23-3, A45-2, A23-5, A46, A24-2, A47, A25, A26,	용도	허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김해시 도시계획조례상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기정	·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불허	· 공장, 노래연습장, 정신병원, 요양병원, 창고, 안마미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실내낚시터 및 이와 유사한 용도
			변경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1)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 3층이하,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4층 이하) 2)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점포주택일 경우, 1층(지하층 제외)에 한하여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총 연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교집회장 및 공연장은 너비 1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변경	불허	·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 공장, 노래연습장, 정신병원, 요양병원, 창고, 안마미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실내낚시터, 제조업소(식품제조관련 제외) 및 이와 유사한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높이	· 3층 이하	
		배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형태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0~1m 이하(상세내용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			

나. 공동주택용지(변경)

용지 구분	가구번호	구 분	비 고		
공동 주택 용지	A3-2, A42-1	용 도	기정	허용 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변경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불허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220% 이하(인센티브 적용시 230%)		
		높 이	· 30층 이하		
		배 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형 태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색 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0~1m 이하(상세내용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				

다. 준주거시설용지(변경)

용지 구분	가구번호	구 분	비 고		
준주거 시설 용지	A2-2, A9, A11-3, A14-2, A19, A20-2, A21, A22-1, A22-2, A40, A43,	용 도	기정	허용 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상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7의 제1호다목부터 아목까지, 제2호 가목부터 타목 중 조례상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 제조업소, 공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
			변경	허용 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상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제외
				불허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 제조업소(식품제조관련 제외), 공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 이	· 층수제한없음		
		배 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형 태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색 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0~1m 이하(상세내용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				

라. 근린상업용지(변경)

용지 구분	가구번호	구 분	비 고		
근린 상업 용지	A17-1, A48-1	용 도	허용 용도	· 관련법규 및 조례에 의함	
			기정 불허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 제조업소, 공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	
			변경 허용 용도	· 관련법규 및 조례에 의함	
			변경 불허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 공동주택, 제조업소(식품제조관련 제외), 공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700% 이하		
		높 이	· 최저층수 2층		
		배 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형 태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색 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0~1m 이하(상세내용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				

마. 공공청사(변경없음)

용지 구분	가구번호	구 분	비 고		
공공 청사	A33-2	용 도	허용용도	· 관련법규 및 조례에 의함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형 태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색 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0~1m 이하(상세내용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				

바. 학교(변경없음)

용지 구분	가구번호	구 분	비 고	
학교	A34	용 도	허용용도	· 초등학교
			불허용도	· 학교 및 부속건물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 관련법규 및 조례에 의함	
		용적률	· 관련법규 및 조례에 의함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형 태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색 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0~1m 이하(상세내용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	

사. 주차장(변경없음)

용지 구분	가구번호	구 분	비 고	
주차장	A13-2, A38-2, A45-1	용 도	허용용도	· 관련법규 및 조례에 의함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 90% 이하	
		용적률	· 360% 이하	
		높 이	· 4층 이하(주차건물 건축시 3층 이상)	
		배 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형 태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색 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0~1m 이하(상세내용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		
	A20-1, A22-3	용 도	허용용도	· 관련법규 및 조례에 의함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 90% 이하	
		용적률	· 630% 이하	
		높 이	· 7층 이하(주차건물 건축시 3층 이상)	
		배 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형 태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색 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0~1m 이하(상세내용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			



####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구명	계획내용	비고
A3-2	차량진·출입불허구간지정	공동주택지 차량출입 불허구간지정 (상세위치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고)
A42-1	차량진·출입불허구간지정	공동주택지 차량출입 불허구간지정 (상세위치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제1편 총론

제2편 건축부문

제3편 공공부문

제1장 총칙

제1장 단독주택용지(변경)

제2장 공동주택용지(변경)

제3장 준주거시설용지(변경)

제4장 근린상업용지(변경)

제5장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제6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1장 총칙

제2장 도로시설

제3장 옥외가로물 시설

제4장 공원·녹지

제5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 제 1 편 총 론

##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적)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 지구단위계획의 구역의 지정을 통해 일정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내덕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 대지의 규모, 용도, 형태와 공간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시행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및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및 결정도에 표시되지 아니한 건축관련지침을 별도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적용범위)

본 지침은 내덕지구 도시개발구역 전역에 적용한다.

### 제 3 조 (지침의 구성)

본 지침은 총 3편으로 구성되며, 제1편은 총칙과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모든 건축용지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제2편은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준주거시설용지, 근린상업용지,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에, 제3편은 공공시설부문에 각각 적용된다.

### 제 4 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 ① 통합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에너지사용계획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협의완료, 승인된 내용 중 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용하여야 하며, 지침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나 김해시 관련조례에 따른다.
- ② 본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일부 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 ③ 지침의 내용은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된다. 이 중 규제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이고, 권장사항은 강요하지 않는 내용들로서 대상지 효율적인 발전을 위하여 가능한 지정된 사항을 따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④ 본 지침 시행 이후 본 지침과 관련된 법령 또는 조례의 제·개정으로 본 지침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제·개정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다.

## 제 5 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2. “지정용도” 라 함은 쾌적한 가로경관 형성 등의 특정한 목적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용도를 말한다.
  3. “권장용도” 란 함은 대상지역의 계획적 기능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된 용도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
  4. “불허용도” 라 함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허용하더라도 해당 대지내 건축물의 전층 또는 특정층에 대해 건축할 수 없는 용도를 말한다.
  5. “건축한계선” 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하지 못하는 선을 말한다.
  6. “전면도로” 라 함은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면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
  7. “차량출입 허용구간” 이라 함은 대지안으로 차량출입이 허용되는 구간을 말한다.
  8. “차량출입 불허구간” 이라 함은 이 구간에 접하는 도로로부터 대지로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을 말한다.
  9. “최고층수” 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10. “최저층수” 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11. “건축물의 전면” 이라 함은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한 주된 출입구를 설치하는 면을 말한다.
  12. “점포주택” 이라 함은 단독주택용도의 공간과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공간이 한 건물내에 공존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3. “주조색” 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적의 7/10이상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14. “보조색” 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의 1/10 이상 3/10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15. “강조색” 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장효과를 위해 사용하는 색으로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적의 1/10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 ②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사회통념상의 관습적 의미로 해석한다.

## 제2편 건축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 제1장 단독주택용지(변경)

#### < 대지에 관한 사항 >

##### 제 1 조 (획지의 분할과 합병)

- ①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건축시에는 환지계획에 의해 구획된 획지를 일단의 대지로 보며, 이 대지를 단위로 건축한다.
- ② 단독주택의 용지는 향후 주택수요여건 및 주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획지간의 합병 및 분할은 허용한다. 단, 획지간의 합병은 과도한 규모가 되지 않도록 2개 획지 또는 660제곱미터 이내에서 허용하며, 획지의 분할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면적이상, 기존 건축물이 없는 경우는 165제곱미터 이상을 허용한다.

#### < 건축물에 관한 사항 >(변경)

##### 제 2 조 (건축물의 용도)(변경)

- 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점포주택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 ② 점포주택의 경우에 근린생활시설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연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1층(지하층 제외)에 한하여 허용한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한하되, 공장, 노래연습장, 정신병원, 요양병원, 창고,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실내낚시터, 제조업소(식품제조관련 제외)용도 및 이와 유사한 용도는 불허한다.(변경)
- ③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종교집회장·공연장은 너비 1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변경)

##### 제 3 조 (건축물의 밀도)

- ① 단독주택내 대지의 건폐율은 60%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단독주택내 대지의 용적률은 180%를 초과할 수 없다.
- ③ 건축물의 층수는 3층을 초과할 수 없다.

##### 제 4 조 (건축선 지정)

- ①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②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까지 발생한 공지는 공작물, 계단, 주차장 및 유사한 시설등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 제 5 조 (건축물의 배치)

- ① 건축물의 주방향은 남향 또는 도로전면부로 향하도록 권장하며, 채광, 통풍 등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배치가 되도록 한다.
- ② 도로변에 접한 모든 건축물은 출입구, 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도로경계선 밖으로 돌출할 수 없다.
- ③ 건축미관 향상을 위해 건축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남쪽방향 일조권을 적용토록 한다.

### 제 6 조 (외벽의 재료, 형태 등)

- ①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 ② 외벽의 색깔은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며, 가구단위로 동일계역의 색상이 되도록 권장한다.
- ③ 단독주택지의 건축물 건축시 옥외계단의 설치를 불허하며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도로변에 면한 건축물은 가급적 창문의 크기 및 높이가 통일성을 지니도록 한다.
- ⑤ 지붕 색상은 먼셀 색상환의 EL035(EL028) 또는 브라운과 오렌지의 혼합색으로 유도한다.(권장)
- ⑥ 단독주택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또는 모입지붕(물매 4:10~5:10)이 되도록 권장하며, 지붕의 재료는 기와류, 아스팔트싱글 등으로 마감하고 판넬로 마감하는 것은 불가한다.
- ⑦ 지붕의 처마는 10cm이상 외벽면에서 돌출되도록 한다.
- ⑧ 옥외 광고물(간판)은 김해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및 신도시 옥외광고물(간판) 설치지침(건설교통부)에 적합토록 설치한다.

### 제 7 조 (담장, 대문 및 서터 등)

- ① 담장은 필요시 설치하며 건축한계선 및 도로에 면한 담장은 생울타리, 목책, 자연석 쌓기로 하며, 담장 및 대문의 높이는 1.5미터 이하로 한다.
- ② 재료, 색깔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어야 한다.
- ③ 대지내 설치하는 조경은 가급적 도로변에 설치하고 수종은 활엽수 또는 상록수 등을 식재하며, 건축물의 대문등 주 출입구 부근에 수고 2m이상, 근원직경 6cm이상의 시화(매화)를 표지 식재토록 권장한다.

### < 차량동선 및 주차에 관한 사항 >

#### 제 8 조 (차량의 진출입)

- ① 인접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는 보행의 잦은 단절을 막기 위해 이웃의 주차공간에 접하여 주차공간을 계획하고 주차출입용 경계구조물이나 포장 등을 공동으로 설치하도록 한다.(권장)
- ②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의 진출입을 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9 조 (주차장의 설치기준)

- ① 단독주택용지의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김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주차장 확보 면수는 김해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규정하는 법정확보 기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③ 노외주차장 부지내 장애인전용 주차장 3%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④ 노외주차장 부지내 자전거 주차장 5%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2장 공동주택용지(변경)

### < 대지에 관한 사항 >

#### 제 10 조 (획지의 분할과 합병)

- ①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건축시에는 환지계획에 의해 구획된 획지를 일단의 대지로 보며, 이 대지를 단위로 건축한다.
- ② 공동주택용지는 단일획지로 계획하고, 분할 할 경우 20,000㎡이상으로 분할하되 4필지이하로 허용한다.

### < 건축물에 관한 사항 >(변경)

#### 제 11 조 (건축물의 용도)(변경)

공동주택용지로 지정된 일단의 필지(이하 '블럭' 이라 한다.)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이외는 건축할 수 없다.(변경)

#### 제 12 조 (건축물의 밀도)

- ① 모든 '블럭' 의 건폐율은 30%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모든 '블럭' 의 용적률은 22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시 230% 까지 가능하다.
- ③ 건축물의 층수는 30층을 초과할 수 없다.

#### 제 13 조 (용적률의 인센티브)(변경)

- ① 주차장 10%이상 추가 확보시 용적률 1% 상승, 주차장 20%이상 추가 확보시 용적률 2% 상승
- ② 단지변화[2개 이상의 동별 형태(탑상형, 판상형 등)가 혼합되어 변화되는 경우] 20% 이상 시 용적률 1% 상승, 단지변화 30% 이상 시 용적률 2% 상승(변경)
- ③ 스카이라인 변화(최고층수와 최저층수의 변화) 20%이상 시 용적률 1% 상승, 스카이라인 변화 30% 이상시 용적률 2% 상승(변경)
- ④ 지하주차비율 60% 이상 시 용적률 1% 상승, 지하주차비율 80% 이상 시 용적률 2% 상승
- ⑤ 법정 조경면적 30% 이상 추가확보 시 용적률 1%상승, 법정 조경면적 50% 이상 추가 확보 시 용적률 2% 상승(변경)

#### 제 14 조 (건축선 지정)

- ①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② 건축선 후퇴부분은 접하는 보도 또는 도로와 단차이가 없도록 처리하며 보도와 동일한 포장 또는 장식포장이 되도록 건축물 신축시 개발주체가 이를 조성한다.

#### 제 15 조 (건축물의 배치)

- ① 공동주택의 배치는 남향배치가 주가 되도록 권장하며, 주민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변화있는 배치가 되도록 한다.
- ② 건축물은 주변의 시각통로 확보가 용이하고, 주민들에게 공간감을 형성시킬 수 있도록 배치한다.
- ③ 공동주택 배치시 학교, 공원등을 비롯한 공공시설과의 연계성을 감안한 보행자 동선을 고려하여 보행자 통로를 확보토록 권장한다.

#### 제 16 조 (건축물의 형태)

- ① 아파트의 형태는 일자형 등의 획일적인 모양은 지양하고, 탑상형과 판상형의 혼합배치가 되도록 권장한다.
- ②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은 경사지붕 또는 모입지붕(물매4:10이상)이 되도록 권장한다.
- ③ 공동주택의 계단실 옥탑부는 옥탑구조물이 대1-2호선과 인근 건물에서 가급적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시각 차폐물을 설치토록 권장한다.
- ④ 공동주택의 옥상에는 가급적 물탱크의 설치를 지양하도록 권장한다.
- ⑤ 단지내 상가 광고물은 가급적 연립형 간판을 사용하도록 한다.
- ⑥ 공동주택의 야간조명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1. 과도한 밝기, 원색색상 사용, 점멸조명 등 현란한 빛움직임, 강한 휘도 라인조명 등을 이용한 자극적 야간조명 형성을 지양한다.
  2. 단지 내 조명 및 주동조명에 의한 개별주거 광침해를 지양한다.
  3. 단지 입구 및 접근로 인식성 향상 등 기능 위주의 조명을 강화한다.
  4. 옥탑부만 과도하게 강조한 조명을 지양한다.
  5. 아파트 BI·차SMS 과도한 크기의 조명사용을 억제하고, 문자나 도형의 부분 조명 방식을 권장한다.

#### 제 17 조 (건축물의 색채)

- ① 아파트 외벽의 색상은 10RP~2.5YR과 10Y~2.5PB정도의 색상을 사용토록 하며 명도와 채도는 김해시 기본경관계획 건축물 색채 범위를 반영한다.
- ② 색채 활용시 한 블럭에는 동일 색상계열내에서 지붕색, 벽면색, 강조색을 선정하여 적용함을 권장한다.
- ③ 아파트의 채도색은 위사항을 반영하여 도시디자인과의 협의를 받도록 한다.



### 제 18 조 (담 장)

- ① 공동주택단지의 외곽도로에 정한 담장은 재료와 형태를 한가지로 통일시키도록 한다.
- ② 담장의 형태는 설치위치에 따라 다음 각호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권장)
  1. 주택단지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 : 투시형 담장으로서는 블록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하거나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5m이하로 한다.
  2. 공원에 면한 담장 :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m이하로 한다. 단 단지내 안전 및 보안을 위해 조경수목 및 낮은담장 등으로 경계를 구분한다.

### < 차량동선 및 주차에 관한 사항 >

#### 제 19 조 (차량출입허용구간)

- ① 차량출입허용구간의 위치와 개소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른다.
- ② 공동주택용지에 계획된 차량출입허용구간 이외는 차량출입을 불허한다.
- ③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차량의 진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 제 20 조 (주차장의 설치기준)

- ① 공동주택용지의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김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주차장 확보 면수는 김해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규정하는 법정확보 기준 이상을 확보하며 장애인주차면을 총 주차면의 3%이상 확보한다.

## 제3장 준주거시설용지(변경)

### < 대지에 관한 사항 >

#### 제 21 조 (획지의 분할과 합병)

- ①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건축시에는 환지계획에 의해 구획된 획지를 일단의 대지로 보며, 이 대지를 단위로 건축한다.
- ② 준주거시설용지는 향후 주택수요여건 및 주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획지간의 합병 및 분할은 허용한다.

### < 건축물에 관한 사항 >(변경)

#### 제 22 조 (건축물의 용도)(변경)

- ① 준주거시설용지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상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따른다. 단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변경)
- ② 준주거시설용지내 제조업소(식품제조관련 제외), 공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는 불허한다.(변경)

### 제 23 조 (건축물의 밀도)

- ① 준주거시설용지내 대지의 건폐율은 70%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준주거시설용지내 대지의 용적률은 350%를 초과할 수 없다.

### 제 24 조 (건축선 지정)

- ①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②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까지 발생한 공지는 공작물, 계단, 주차장 및 유사한 시설등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 제 25 조 (외벽의 재료, 형태 등)

- ① 건축물의 외벽면의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서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에 조화되도록 설치한다.
- ② 도로에 접한 건축물 1층 전면 벽면의 50%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 ③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1층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한다.
- ④ 대지의 측면 경계선과 건축물 사이의 이격거리가 3미터 미만이고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의 이격공지는 조정, 담장, 문 등으로 차폐하고, 이때 담장, 문, 지하층 출입구 등은 건물의 벽면과 조화되는 재료로 사용한다.
- ⑤ 옥외 광고물(간판)은 김해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및 신도시 옥외광고물(간판) 설치 지침(건설교통부)에 적합토록 설치한다.

### 제 26 조 (담장)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 중의 하나에 적합해야 하며, 그 기준을 따르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거쳐 달리할 수 있다.

1. 0.6미터 높이의 식수대
2. 1.0미터 높이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 < 차량동선 및 주차에 관한 사항 >

#### 제 27 조 (차량의 진출입)

- ①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곳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 ② 인접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는 보행의 잦은 단절을 막기 위해 이웃의 주차공간에 접하여 주차공간을 계획하고 주차출입용 경계구조물이나 포장 등을 공동으로 설치하도록 한다.(권장)

#### 제 28 조 (주차장의 설치기준)

- ① 준주거시설용지의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김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주차장 확보 면수는 김해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규정하는 법정확보 기준이상을 확보하며 장애인주차면을 총 주차면의 3%이상 확보한다.
- ③ 노외주차장 부지내 자전거 주차장 5%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장 근린상업용지(변경)

### < 대지에 관한 사항 >

#### 제 29 조 (획지의 분할과 합병)

- ①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건축시에는 환지계획에 의해 구획된 획지를 일단의 대지로 보며, 이 대지를 단위로 건축한다.
- ② 근린상업용지는 향후 주택수요여건 및 주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획지간의 합병 및 분할은 허용한다.

### < 건축물에 관한 사항 >(변경)

#### 제 30 조 (건축물의 용도)(변경)

근린상업용지에는 김해시도시계획조례 제31조에서 정하는 근린상업지역의 허용 건축물을 따르되, 공동주택, 제조업소(식품제조관련 제외), 공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는 불허한다.(변경)

#### 제 31 조 (건축물의 밀도)

- ① 근린상업용지내 대지의 건폐율은 70%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근린상업용지내 대지의 용적률은 700%를 초과할 수 없다.
- ③ 근린상업용지내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상이어야 한다(최저층수 2층).

#### 제 32 조 (건축선 지정)

- ①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②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까지 발생한 공지는 공작물, 계단, 주차장 및 유사한 시설등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 제 33 조 (외벽의 재료, 형태 등)

- ① 건축물의 외벽면의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서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에 조화되도록 설치한다.
- ② 건축물 건축시 지붕형태를 평지붕으로 마감하는 경우 옥상녹화를 권장하고 5층이상이거나 연면적 3천㎡이상인 건축물의 옥상난간등은 디자인을 고려한 외관 및 야간경관조명 설치토록 권장한다.
- ③ 도로에 접한 건축물 1층 전면 벽면의 50%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하도록 하며, 주거용지와 마주보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거용지 건축물의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반사유리 설치를 지양한다.
- ④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1층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한다.
- ⑤ 대지의 측면 경계선과 건축물 사이의 이격거리가 3미터 미만이고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의 이격공지는 조경, 담장, 문 등으로 차폐하고, 이때 담장, 문, 지하층 출입구 등은 건물의 벽면과 조화되는 재료로 사용한다.

⑥ 옥외 광고물(간판)은 김해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및 신도시 옥외광고물(간판) 설치 지침 (건설교통부)에 적합토록 설치한다.

⑦ 건축물의 야간조명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1. 과도한 밝기, 원색, 점멸 조명 등을 이용한 자극적 야간조명 형성을 지양한다.
2. 랜드마크적 건축물 및 공간에 대한 우선적 경관조명 설치를 권장한다.

#### 제 34 조 ( 담장 )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 중의 하나에 적합해야 하며, 그 기준을 따르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거쳐 달리할 수 있다.

1. 0.6미터 높이의 식수대
2. 1.0미터 높이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 < 차량동선 및 주차에 관한 사항 >

##### 제 35 조 (차량의 진출입)

- ①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곳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 ② 인접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는 보행의 잦은 단절을 막기 위해 이웃의 주차공간에 접하여 주차공간을 계획하고 주차출입용 경계구조물이나 포장 등을 공동으로 설치하도록 한다.(권장)

##### 제 36 조 (주차장의 설치기준)

- ① 근린상업용지의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김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주차장 확보 면수는 김해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규정하는 법정확보 기준 이상을 확보하며 장애인주차면을 총 주차면의 3%이상 확보한다.

#### 제5장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 < 공통사항 >

##### 제 37 조 (획지의 분할과 합병)

확정된 공공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분할 또는 합병할 수 없다.

##### 제 38 조 (건축물의 구조)

20m이상인 도로에 접한 부지의 경우 무분별한 조립식 건축물 사용을 금지한다.

##### 제 39 조 (건축한계선에 의한 공지 조성)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까지 발생한 공지는 공작물, 계단, 주차장 및 유사한 시설등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단 조경시설의 설치와 식재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0 조 (차량출입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의 진출입을 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학교에 관한 사항 >**

**제 41 조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학교시설의 건축물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의 최고한도는 【 표1 】를 따른다.

【 표1 】 학교시설의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구분(가구번호)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A34	초등학교 및 부속건물	관련법규 및 조례에 의함	관련법규 및 조례에 의함	5층 이하

**제 42 조 (담장 및 조경)**

담장은 1.5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제 43 조 (보행자 출입구)**

- ①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 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제 44 조 (건축선 지정)**

- ①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②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까지 발생한 공지는 공작물, 계단, 주차장 및 유사한 시설등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제 45 조 (주차장의 설치기준)**

- ① 주차장 확보 면수는 김해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규정하는 법정확보 기준 이상을 확보하며 장애인주차면을 총 주차면의 3%이상 확보한다.

**< 주차장에 관한 사항 >**

**제 46 조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주차장의 건축물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의 최고한도는 【 표2 】 를 따른다.

【 표2 】 주차장의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구분(가구번호)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A13-2 A38-2 A45-1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 (주차전용건축물 포함)	90%	360%	4층이하 (주차건물 건축시 3층이상)
A20-1 A22-3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 (주차전용건축물 포함)	90%	630%	7층이하 (주차건물 건축시 3층이상)

**제 47 조 (건축선 지정)**

- ①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②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까지 발생한 공지는 공작물, 계단, 주차장 및 유사한 시설등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 공공청사에 관한 사항 >**

**제 48 조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공공청사의 건축물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의 최고한도는 【 표3 】 를 따른다.

【 표3 】 공공청사의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구분(가구번호)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A33-2	· 관련법규 및 조례에 의함	60	180	5층이하

**제 49 조 (건축선 지정)**

- ①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②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까지 발생한 공지는 공작물, 계단, 주차장 및 유사한 시설등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 제6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 제 50 조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완화)

- ① 건축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를 들어 건축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침의 완화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관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장 또는 승인권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건축주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입안자 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당해 구역의 교통영향평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
  2. 대지의 합병, 2개 이상의 대지에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 등 대지의 범위 등이 변경되어 지침 내용 및 규제도가 불합리한 경우
  3. 규제사항을 완화하여도 지구단위계획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설계상 좋은 착상이 있는 경우
  4. 기타 지구단위계획의 기본개념과 건축질서를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허가 또는 승인권자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승인권자는 관련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계획에 관한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기본방향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계지침을 완화할 수 있다.

### 제 51 조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 ① 공동주택 건축시 경상남도의 「공동주택 無장애환경 설계기준」에 맞는 공동주택 단지가 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
- ② 공동주택 건축시 아파트의 색채에 관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득할 수 있도록 외벽색채 등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골조공사 50%이내 경과전까지 김해시 도시디자인과에 제출토록 한다.

## 제3편 공공시설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제1장 총칙

#### 제 1 조(목적)

본 지침은 내덕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내의 공공시설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도면으로 표기할 수 없는 도시조경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시행지침의 기본원칙)

- ① 본 지침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의 법규나 조례 등을 따른다.
- ② 본 지침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과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법규의 범위내에서 이들 중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 ③ 본 지침서에서 제시되는 내용은 지침이 추구하는 설계목표나 방향을 가시화하는 것으로 각시행주체에 대해 권장사항적 성격을 지닌다.

### 제 3 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 ② “수경시설(修景施設)” 이라 함은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보행활동의 활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되는 조형분수, 벽천, 캐스캐이드, 연못, 계류 등의 시설요소와 공공용 환경조형물 등을 말한다.
- ③ “둔덕(Mounding)” 이라 함은 완충녹지, 공공공지 또는 공원의 일부를 활용하여 인접하고 있는 기능과의 기능 및 경관적 상충을 방지하도록 일정높이 이상의 자연스러운 동산을 확보하고 식재기반을 조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④ “특수횡단보도” 라 함은 보행자의 안전과 운전자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감속유도의 포장이나 필요시 자전거의 횡단표시를 함께 설치한 횡단보도를 말한다.
- ⑤ “보행우선 험프(Hump)라 함은 보행자동선과 차량동선간의 평면적인 교차가 예상되는 지점에 차량도로구간의 일부구간을 상승시켜 차량의 과속방지를 꾀함으로서 보행활동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처리되는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
- ⑥ “자전거 도로” 라 함은 자전거 이용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차도 또는 보도구간과 분리된 별도의 자전거용 도로시설을 말한다.
- ⑦ “보행자 전용도로” 라 함은 일반도로 중 차량을 통행을 금지하되 보행자의 통행만이 허용되는 구간을 말한다.

## 제2장 도로시설

### <가로변 식재에 관한 사항>

가로변 식재를 조성함에 있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한 법률 및 김해시 조경시설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 4 조 (가로수 식재 기본원칙)

- ① 보차도 구분이 있는 노폭 15m이상 도로로서 보도폭 3.0m이상인 도로에는 가로수를 식재하여야 한다.
- ② 가로수 식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재간격 8m 내외를 기준으로 한 열식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부분의 식재시에는 수목보호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동일노선에는 동일수종의 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 ④ 버스정류장 전후구간에는 가로수로 인하여 운전자의 시야가 가리거나 승하차시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 ⑤ 차량안내시설인 교통안내표지판 등 설치로 인하여 이용객의 시야가 가리거나,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가로수관리청과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단 가로등 및 교통안내판 등 설치시 가로수와 최소 3m 이상 이격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 ⑥ 중앙분리대 및 가로화단 등 기타 가로수 관리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수목



(초화류)를 식재할 수 있다.

- ⑦ 건널목, 교차로 등 곡각부는 보행자 및 차량 방해가 되지 않은 범위에서 수목을 식재할 수 있다.
- ⑧ 가로수 및 수목보호를, 지주목은 김해시 가로환경 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 <가로변 포장에 관한 사항>

##### 제 5 조 (포장재료 및 패턴적용)

- ① 포장재료는 보행 및 차량의 하중을 감안하여 내구성 있는 재료가 선정되어야 하며, 미끄럼과 눈부심이 방지 될 수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 ② 보도부분의 포장패턴은 단순한 형태미를 갖는 패턴의 반복을 기본으로 하되, 시각적 흥미유발과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가로위계별, 장소별 특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 ③ 포장패턴은 가로수 식재 및 시설물의 배치 등과 연계하여 일체적 가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횡단보도 주변에는 시각장애자용 점자블럭과 턱없는 경계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⑤ 동일 보도구간내 동일 포장패턴의 반복에 따른 경관적 단조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의 인접부, 보행자전용도로와의 교차접속부 등에 부분적인 포장패턴의 변화를 적극 고려한다.

#### <자전거도로에 관한 사항>

##### 제 6 조(기본원칙)

- ① 지정된 자전거도로의 평면 교차지점에서는 자전거 횡단표기시설을 설치하며, 자전거도로의 진입부, 결절부 등의 장소에는 자전거 보관대와 휴게, 편익시설을 배치하여야 한다.
- ② 주요 자전거교통 결절부에 자전거이용 목적시설 및 자전거도로망에 대한 종합안내판을 설치하며, 노선상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부분 및 교차접속 구간에는 노선예고 표지판, 분리대, 방호책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자전거용 포장은 투수콘등 일체적이고 빗물의 배수가 원활한 소재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콘크리트, 아스콘, 소형고압블럭을 도입할 수 있다.
- ④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구간의 자전거도로 포장은 표면배수를 위한 구배를 유지하는 한편, 미끄럼이 방지되도록 하며 자전거도로 주요 진입부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단차를 배제한다.
- ⑤ 노선의 이용특성상 야간에 빈번한 이용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범죄예방을 위하여 조명시설을 배치하여야 한다.
- ⑥ 자전거보관대는 자전거도로변에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도모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 <보행자전용도로에 관한 사항>

### 제 7 조(보행자전용도로 조성 기본원칙)

- ① 보행자 뿐 만 아니라 자전거 및 휠체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단 및 단차가 없도록 하며, 부득이 하게 계단을 설치한 경우 경사로를 동시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② 보행자전용도로의 공간구성, 식재, 시설물배치, 포장은 입지여건 및 이용특성에 따라 기능, 형태, 식재기법 등에 있어 유형별로 특화한다.
- ③ 보행자전용도로와 인접한 시설 중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등과 같은 오픈스페이스 요소 뿐만 아니라 학교와 같은 다중이용시설과의 연계성 향상을 위한 통로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한다.
- ④ 보행자전용도로 내부에는 적정간격으로 낙엽교목을 식재하여 녹음을 조성하고 휴게·편익시설을 도입하여 보행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 제 8 조(보행자전용도로 유형별 조성방안)

- ① 포장은 투수성포장재 기본으로 하되, 공간적 특화가 요구되는 입구부분, 휴게공간, 공공시설 용지 연계부분 등에서는 석재타일을 사용한 독자적 패턴포장을 실시하도록 고려한다.
- ② 보행자전용도로의 주입구부분에는 차량진입 방지 및 벤치의 역할을 겸하는 볼라드를 2~3간격으로 배치하며, 안내와 입구상징물의 역할을 수행하는 문주를 가급적 확보하도록 한다.
- ③ 공동주택지의 경우 1개지점 이상의 개구부를 설치하며 개구부변에 변화가 있는 폭의 녹지를 확보하고 휴게 및 편익시설을 배치하되, 입구 및 활동의 결절광장부에는 지표 및 경관수종을 도입하도록 한다.

## <기타시설에 관한 사항>

### 제 9 조(교차접속부 처리)

- ① 횡단보도는 주요도로의 교차접속부 및 지침도상의 지정된 장소에 도로교통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며, 설치간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200m 이상이 되도록 한다.
- ② 보행우선 횡프의 경사부는 5-10%로 설정하되, 차량의 바퀴가 지면에 닿지 않도록 20cm내외의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 ③ 횡프와 보도 연결횡단부는 단차없이 시설되도록 하며, 차량진입 방지를 위해 볼라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 10 조(버스정류장)

- ① 정류장은 교차로, 횡단보도, 세가로 입구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버스정류장에는 각종 안내시설 및 가로시설물을 집합적으로 설치하되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포켓형 버스정류장(Bus-Bay)에 인접하여 완충녹지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인접된 녹지의 일부를 할애하여 벤치, 쉼터 등 보행인을 위한 시설을 확보토록 한다.

### 제 11 조(택시정류장)

- ① 버스정류장 및 공공시설등 주보행동선과 연계배치하여 효과적인 승환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되 버스정류장과는 일정거리를 이격하고 본선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시설물 자체가 방향표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명료성과 식별성을 고려하여, 형태와 색채는 주변과 대조시켜 인지성을 높이도록 한다.

## 제3장 옥외가로시설물

### 제 12 조(차량 및 보행안내시설)

- ① 차량안내시설인 교통안내표지는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 등에 의거 설치하되,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로등 및 신호등과 통합 설치함으로써 시설물의 난립을 방지하여야 한다.
- ② 보행안내시설 중 지도의 수록이 요구되는 도시안내시설과 공원안내시설, 그리고 방향안내시설과 버스노선 및 정류장 안내, 게시판 등은 동일한 디자인 모티브를 적용하여 시설되어야 한다.
- ③ 보행안내시설의 형태, 재료, 색상 등의 사용에 있어 통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수록 정보의 위계에 따라 규모를 조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 13 조(가로장치물의 설치원칙)

- ① 가로상에 배치되는 각종 가로장치물의 경우 시설물의 규모와 기능 등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통합, 조절하는 이미지 동질화방안을 구축한 후 종합적인 측면에서 가로장치물을 일괄 설계하여야 한다.
- ② 가로장치물중 유사한 기능을 갖는 대상은 가급적 복합화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 ③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입구부, 대중교통수단 승하차지점, 횡단보도 등 주요 보행집분산 지점에는 가로시설물의 집약적 배치를 도모하므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제 14 조(보행안내시설과 가로장치물의 배치)

- ① 보행안내시설과 가로장치물은 일괄적으로 계획·설계하여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보행안내시설과 가로장치물의 배치는 보행인의 집중이 예상되는 광장부, 버스정류장부, 보행자전용도로와의 교차접속부 등을 기본적으로 고려한다.
- ③ 보행안내시설을 포함한 가로장치물을 가로변에 배치할 경우 녹지가 있는 곳에서는 가급적 보도와 인접한 녹지내부에 배치토록 하여 보행활동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 제4장 공원, 녹지

### <공원에 관한 사항>

#### 제 15 조(공원 조성원칙)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하도록 한다.

- ① 공원마다 한 두 수종의 유실수 또는 화목을 집중 식재하여 특화된 경관을 창출하도록 하며, 녹피울과 계절변화 및 주변 거주민과 시설 여건을 포함한 수종과 규격을 결정하도록 하며, 상세 녹화안은 실시계획인가시 관련도면을 따르도록 한다.
- ② 공원내 시설은 인근 주거시설내에 확보될 어린이놀이터의 단순기능 놀이시설, 모험놀이시설, 복합놀이시설과 소규모운동장 등을 생활권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구분 배치한다.
- ③ 공원경계부는 화관목에 의한 생울타리나 마운딩으로 처리하며, 주변 보행인으로부터 쉽게 노출되어 안전사고와 범죄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한다.
- ④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아동복지법, 주택법,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도록 하며, 이용시설과 놀이시설 하부지면부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 ⑤ 공원내 편의시설은 어린이와 보호자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고 주변 거주민과 시설 여건을 분석한 후 시설을 결정하도록 하며, 실시계획인가시 관련도면을 따르도록 한다.
- ⑥ 공공시설 인수, 인계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이행하도록 한다.

### <녹지에 관한 사항>

녹지를 조성함에 있어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하도록 한다

#### 제 16 조(녹지내 식재원칙)

- ① 녹지의 식재는 가로수, 공원 등 인접시설과 연계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녹지의 폭과 녹지내 인접하게 될 시설 등을 감안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② 녹지 중 특히 완충녹지대의 수종은 분진, 매연, 소음 등 환경오염에 잘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③ 완충녹지의 식재는 보도측으로부터 관목 밀식, 중·소규모 교목 군락식재, 대교목 랜덤식재 및 상록교목군락에 의한 배경식재 등의 단계적 식재기법을 고려한다.
- ④ 사면부녹지는 토사유출 및 재해위험이 있으므로 사면구간의 특성에 알맞은 비탈면 보호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제 17 조(녹지내 도입시설)

- ① 지역간 연결도로변 완충녹지는 교통소음, 철도소음 등 쾌적하고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방음벽 및 이중창 설치
- ② 버스정류장 등 보행집분산 지점에는 벤치, 파고라 등의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녹지내 유보로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선변화지점 및 입구부 등에 조명겸용 불라드, 유도안내표시 등의 시설배치를 고려한다.

## <광고물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제 18 조(광고물 설치기준)

간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허가시 광고물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 광고물 부서와 사전협의하고, 사용승인 신청시에도 옥외광고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건축물경관이 도시경관과 조화되게 유도하여야 한다.

## 제5장 지구단위계획운용에 관한 사항

### 제 19 조(지침의 완화)

공공시설부문에 해당되는 모든 시설은 본 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심의위원회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타당성 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① 동 지침 승인이전에 관계법령에 의거 승인을 얻어 기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사업으로서 동지침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 ②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시설 등 타 법령의 시설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본 지침과 상충되는 경우
- ③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본 지침 적용이 곤란한 경우
- ④ 상기 이외에 시행지침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관련심의위원회에 인정한 경우

김해시 공고 제2024-2339호

## 김해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임호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김해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임호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6일

### 김 해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김해시 외동 산6-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김해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임호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임호공원 내 체육시설 재정비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m <sup>2</sup> )	금회 시행면적(m <sup>2</sup> )	비고
근린공원 (임호공원)	168,660	23,461	최초결정일 1986.10.1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김해시장(공원녹지과장)
- 주소 : 김해시 김해대로 2401

5. 사업시행기간 : 2023. 11. 30. ~ 2024. 11. 30.

6. 준 공 일 : 2024. 5. 2.

7. 문 의 처 : 김해시청 도시계획과(☎055-330-3596) 및 공원녹지과(☎055-350-6315)